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The 105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본부 사업보고

2021년 춘계노회용

Lord! Bring us
your restoration.

주여!
이제 회복하게
Lord! 하소서
Bring us your restoration (스 10:1, 12 행 3:19~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차 례

인 사 말 씀 -----	2
조 직 및 교 세 -----	3
제105회기 주요사업설명 및 현안 보고 -----	6
사 무 총 장 실 -----	17
행 정 · 재 무 처 -----	26
▶ 행정 사무 -----	26
▶ 행정 재 무 -----	71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	82
해외·다문화선교처 -----	91
교 육 · 훈 련 처 -----	95
도 농 · 사 회 처 -----	100
제105회기 각 노회 상회비 및 부과상회비 납입현황 -----	105
제105회기 각 노회 총회주일한금 입금 현황 -----	107

인사말씀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총회 총대님들, 총회 노회 산하 기관을 섬기는 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본부는 제105회기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 사도행전 3장 19~21절)를 중심기조로 삼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대응하며 정책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급재해구호의 차원을 넘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0일에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증 교회대응지침을 보낸 이래 2021년 1월 22일에 18번째 대응지침을 각 교회에 보내서 안전한 예배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농사회처에서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난구호기금을 모아 대응을 하면서 국내외군특수선교처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립대상교회 지원, 해외·다문화 선교처의 총회 파송 선교사 지원, 교육훈련처의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과 코로나19 하에서 목사고시 시행, 행정재무처의 전자결재 전면시행과 화상회의 설비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농사회처가 중심이 되어 총회본부 5개 처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변화된 국가재난상황 하의 대응 매뉴얼 작성과 국내외 군·특수선교처를 중심으로 목회 매뉴얼 작성 등 각 처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5개 처는 국내전도와 목회지원, 해외선교, 주일학교 교육, 사회봉사, 군선교, 농어촌선교, 신학교육과 목사고시, 남북한 교류사업, 사이버 이단 대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사업을 감당하며 전국 69개 노회와 9,288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정책 사업을 감당하는 각 부서 임원과 총회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본 교단의 노회와 교회, 그리고 250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조직 및 교세

I. 조 직

1. 총회 임원회

총 회 장	: 신정호 목사(전 주)		
목 사 부 총 회 장	: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장 로 부 총 회 장	: 박한규 장로(부 산 동)
서 기	: 윤석호 목사(인 천 동)	부 서 기	: 최충원 목사(경 기)
회 록 서 기	: 박선용 목사(충 청)	부 회 록 서 기	: 김준영 목사(목 포)
회 계	: 장오표 장로(서울동북)	부 회 계	: 최효녀 장로(서울강북)
사 무 총 장	: 변창배 목사(언권회원)		

2. 상임부

부 서	부 장	서 기	회 계
정 치 부	이성주 목사 (서 울 동)	윤태현 목사(순 천)	신용부 장로(경 남)
규 칙 부	이명덕 목사(용 천)	마홍락 목사(경 동)	임남관 장로(제 주)
재 정 부	김대권 장로 (서 울 서)	이형욱 장로(평 양)	이수원 장로(서울동북)
신 학 교 육	민경운 목사 (서 울 동)	김영일 목사 (천 안 아 산)	현정민 장로(서울동남)
재 판 국	이종문 목사(전 남)	김 기 목사(대 전)	박찬봉 장로(경 북)
국 내 선 교	임현희 목사(전 주)	장균원 목사(용 천)	김재봉 장로(인 천)
세 계 선 교	서화평 목사(전 주)	김정현 목사 (서 울 강 북)	나선환 장로(서 울)
교 육 자 원	황세형 목사(전 북)	이기주 목사(울 산)	박기상 장로(영 등 포)
사 회 봉 사	임한섭 목사 (순 천 남)	도영수 목사(경 동)	신동훈 장로(서울서남)
군경교정선교	권위영 목사(서 울)	이형준 목사(경 남)	성윤경 장로(충 남)
농어촌선교	김광훈 목사 (광 주 동)	이진숙 목사(진 주)	양상주 장로(대구동남)

3. 상임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고 시 위 원 회	한상영 목사(광 주)	장찬호 목사(서 울 서)	연제국 목사(충 청)
감 사 위 원 회	신영식 장로(순 천 남)	신성환 목사(포 향)	박 훈 장로(서 울 동)
헌 법 위 원 회	이진구 목사(목 포)	오경남 목사(함 해)	박상욱 장로(충 북)
평신도위원회	서은성 목사(서 울 북)	이대희 목사(서울동남)	강성수 장로(울 산)
남북한선교위	유갑준 목사(직무대행/광주)		임성학 장로(포 향 남)
훈련원운영위	박석진 목사(포 향)	배규현 목사(순 천)	남상철 장로(안 양)
이단사이비대책위	심상효 목사(대 전 서)	박홍길 목사(강 원 동)	최규재 장로(순 천)

4. 정기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선거관리위원회	김순미 장로(서울)	박남석 목사(전주)	송인화 장로(영주)
통 계 위 원 회	윤석호 목사(인천 동)	최광순 목사(용천)	

5. 재단 및 기관

기 관 명	이 사 장	서 기 이 사	회 계 이 사
유 지 재 단	림형석 목사(안양)	신동설 목사(대전 서)	장인수 장로(대구서남)
연 금 재 단	최성욱 목사(서울강남)	박도현 목사(평남)	정만수 장로(부천)
복 지 재 단	민경설 목사(서울서남)	조건희 목사(서울)	박경희 장로(서울강남)
실 로 암 재 단	김선태 목사(서울)	이순창 목사(평북)	
장 학 재 단	김영철 목사(서울관악)	이필산 목사(용천)	김종식 장로(서울동남)
문 화 법 인	손신철 목사(인천)	정기수 목사(서울강동)	
장로교출판사	남성현 목사(전남)	최에릭 목사(서울관악)	류재돈 장로(진주 남)
한국기독교공보사	신정호 목사(전주)	이종삼 목사(경남)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조재호 목사(서울서남)	주현신 목사(서울 남)	여충호 목사(서울 남)
손양원사업회	김의식 목사(영등포)	강점석 목사(여수)	방성환 장로(영등포)
한국교회연구원	채영남 목사(광주 동)	김의식 목사(영등포)	신용식 장로(서울강남)

6.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교회연합사업위	김태영 목사(부산 동)	윤석호 목사(인천 동)	강신근 장로(대구서남)
정 책 기 획 및 기 구 개 혁 위	정해우 목사(평북)	김주하 목사(인천 동)	황진웅 장로(영등포)
세 대 별 특 별 위	김운성 목사(서울)	김후식 목사(평북)	신관우 장로(부산 동)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이정원 목사(서울강북)	백성훈 목사(용천)
에큐메니칼위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이정재 목사(용천)	전학수 장로(진주 남)
역 사 위 원 회	황기식 목사(천안아산)	이강표 목사(김제)	박재천 장로(대구동남)
교회동반성장위	박한규 장로(부산 동)	김상중 목사(제주)	김혜옥 장로(영주)
언 론 홍 보 및 커 뮤 니 케 이 션 위	이석형 목사(서울동북)	황인돈 목사(평북)	정찬홍 장로(영등포)
이 슬 램 및 단 군 상 대 책 위	임준태 목사(광주)	조인서 목사(평양)	김관기 장로(강원 동)
인 권 및 평 등 위	이종삼 목사(경남)	이광호 목사(광주)	사학기 장로(서울강동)
동 성 애 및 젠 더 특 별 대 책 위	정진모 목사(대전 서)	류보은 목사(순천)	홍성용 장로(서울동북)
재난위기대처위	김영걸 목사(포항 남)	김종성 목사(대전 서)	강정용 장로(용천)
화해조정전권위	채영남 목사(광주 동)	박도현 목사(평남)	윤재인 장로(충청)
코 로 나 1 9 미 래 전 략 위	김의식 목사(영등포)	최태순 목사(충남)	류재돈 장로(진주 남)

7.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총회주제연구위	황해국 목사(서울서북)	황순환 목사(충청)	
연 금 재 단 장 기 발 전 대 책 위 원 회			
	박진석 목사(서울강동)	방승필 목사(충청)	서재철 장로(전남)
기독교학교위원회	최광순 목사(용천)	이재학 목사(울산)	이준철 장로(전주)
울릉도(독도) 선교 100주년기념관건축위			
	오세원 목사(대구동)	홍성호 목사(순천남)	원덕길 장로(안양)
교회성폭력대책위	장의환 목사(포항남)	박영배 장로(울산)	양정석 장로(순천)

8. 총회 별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헌 법 개 정 위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김성기 목사(충청)	조한원 장로(서울서남)
7 개 신 학 대 구 조 조 정 위 원 회			
	박희중 목사(대구동남)	곽재욱 목사(서울서)	
순 교 자 및 순 직 자 심 사 위 원 회			
	김지한 목사(평남)	임기수 목사(전주)	임순만 장로(대구동남)
명성교회수습전권위	채영남 목사(광주동)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	손달익 목사(평양)	최종호 목사(익산)	김기수 장로(전주)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			
	박한규 장로(부산동)	박중근 목사(서울)	유홍열 장로(서울)
총회연금재단대책위	양원용 목사(전남)	정일세 목사(부산동)	

II. 교 세 (2019. 12. 31. 현재)

번호	구분	통계수		증 감 (A-B)	증감율 (%)	비고
		2019년(A)	2018년(B)			
1	노 회 수	68	68	0	0.00%	
2	교 회 수	9,288	9,190	98	1.07%	
3	목 사 수	20,775	20,506	269	1.31%	
4	전 도 사 수	2,796	2,831	-35	-1.24%	
5	교육전도사수	3,797	3,933	-136	-3.46%	
6	장 로 수	32,511	32,278	233	0.72%	
7	안수집사수	77,983	77,759	224	0.29%	
8	권 사 수	182,292	179,572	2,720	1.51%	
9	서리집사수	581,000	589,525	-8,525	-1.45%	
10	제 직 수	869,830	879,154	-9,324	-1.06%	
11	세례교인수	1,674,221	1,681,531	-7,310	-0.43%	
12	전체교인수	2,506,985	2,554,227	-47,242	-1.85%	유아세례포함
13	결 산 액	1,415,077,887천	1,382,961,481천	31,475,234천	2.27%	2018년도 경상수입 결산액

제105회기 총회 주요사업

1.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사업

제105회기 총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스10:1,12 / 행3:19~21)”를 주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제사업은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위기와 이로 인한 불투명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목회전망이 한층 어두워졌지만 에스라 시대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과 예배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사회와 만물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첫 시작으로 ‘2020총회대각성기도회’를 2020.11.12.에 도림교회에서 회복을 간구하며 눈물로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총회 주제 및 중점 사업을 설명하며 회복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부권 권역별 세미나는 2020.11.27.에 전주시온성교회에서, 수도권지역은 2020.12.1.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동부지역은 2020.12.8.에 포항중앙교회에서, 중부지역은 2020.12.10.에 대전노회회관에서 교육훈련처가 실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신년특별기도회’를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교단 모든 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갖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상생하기 위해 자립교회가 예배 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초청하는 강단교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 1,090여 곳의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가 자립교회의 초청을 받았으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초기 목표였던 1,000교회를 초과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국노회 임원, 제105회기 총회 임원 및 상임부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회 기간을 ‘신년’에 국한시키지 않고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교단 교회의 ‘회복’에 대한 열망과 공교회 신학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신년특별기도회’는 국내외군·특수선교처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하였고, 현재 자립대상교회(개척, 농어촌 지역교회 등) 목회자들의 목회 경험담 및 코로나19를 견뎌낸 간증을 엮어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교회가 매월 첫날 새벽기도회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총회는 관련 설교영상과 기도영상, 공동기도제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회복을 선포함’이라는 주제로 신정호 총회장님께서 신년사와 목회서신을 제공하셨고, 2월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조건희 목사의 월삭기도회를 시작으로, 3월 ‘다음세대의 회복’을 주제로 박봉수 목사가, 4월 ‘작은 자의 회복’을 주제로 강석훈 목사가 진행하였으며, 5월 ‘가정의 회복’, 6월 ‘한민족의 회복’, 7월 ‘세계선교의 회복’, 8월 ‘기도의 회복’, 9월 ‘장로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월삭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총회 정보화 사업

총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이번 회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의 웹표준 준수와 정보 보안 적용으로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선교사 관리 프로그램의 신규 서버로의 이전, 사이버연수원 서버 내부 이전, 홈페이지 콘텐츠 DB 마이그레이션 및 고도화, 홈페이지 오류 및 기능 개선,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총회 홈페이지 접근성이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개되는 뉴 노멀, 비대면, 다중접촉시대에 대응하여 총회의 업무와 설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의 전면적인 전자결재 시행, 총회 회의실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대강당 등에 화상회의 설비, 화상과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 마련,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총회의 정책사업과 일상업무를 긴급하게 개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다음세대 교육과 세계선교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교회연합사업

교회연합사업 기관 및 타 교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연합사업이 본 교단 및 한국교회 전체의 방향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합기관 및 타 교단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제4회 총회를 개최하고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이철 감독(기감), 장종현 목사(백석)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공 교단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운동이 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관련 사업, 대사회 관련 사업, 평화 통일 준비 사업,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제69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경호 의장주교(대한성공회)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 한반도 종전평화운동, 100년사업추진 기반 확대 등 핵심주제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성, 한국교회 아카데미 협력 방안 모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제38회 정기총회를 통해 예장합동 김종준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장로교단 연합을 위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전개, 장로교의 날 활성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공동의 방법 모색, 차별금지법 대응, 한국교회 미래 발전 연구 등 대사회, 정부, 교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총회 기구개혁과 교단 혁신

제105회 총회 수임 안전과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기구개혁 관련 여러 안전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교단의 선교적 과제 수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회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기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회 기구 개혁, 업무 일원화 등의 개별적인 수임 안전들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 교단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을 위해 총회 각 분야별 현 상황을 검토하고, 총회 정책 방향 재설정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총회 장기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해외 동역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력

본 교단이 가입한 6개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전 세계의 43개 동역교단과 다양하게 선교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적인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실행위원회는 2020. 11. 9. ~ 13일과 2021. 2. 15. ~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배현주 목사(WCC 실행위원)가 참석하였습니다. WCC 제11차 총회는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2022.8.31. ~ 9.8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위원회는 2021.6.23. ~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WCC 세계기독교여성한국순례(Pilgrim Team Visit to Korea)가 2020. 7. 20 ~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WCC 실행위원인 배현주 목사가 참여하였고, 에큐메니칼 국제청년의 날이 2020. 8. 1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WCC 청년위원인 이한빛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동북아시아협의회(NEAAC) 2021 온라인 회의가 2021.2.8. ~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북아시아협의회 총대인 조주희 목사, 채송희 목사, 정병화 전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아시아에큐메니칼훈련(AEI)이 2020.11.2. ~ 3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박호성 전도사(장신대)가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이후 변화한 여성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Women in a Post-COVID-19 World)’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021. 3. 8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이한빛 청년(WCC 청년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CWM) 아시아청년대회(AYI)가 2020.8.22. ~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김주은 청년(장신대)과 박준범 전도사(장신대)가 참여하였고, 온라인 신학협의회(e-DARE)가 2020.10.30. ~ 1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CWM 총대인 최상도 목사, 오민우 목사, 김주은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CWM 동남아시아 선교국장 줄리 심 목사(Rev. Julie Sim)와 2020년 본 교단의 CWM 프로그램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2021. 3. 3일에 온라인으로 회의하였습니다.

복음선교연대(EMS) 2020 정기총회가 2020.11.12. ~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EMS 총대인 오현선 목사와 최상도 목사가 참여하였으며, 2021-1차 선교위원회가 2021.2.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최상도 목사(호신대)가 참석하였습니다. EMS 한국연락담당자로 남소현 목사(기장)를 2020.7.1. ~ 2023.6.31.일까지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EMS 총무 디터 하이드만 목사(Rev. Dr. Dieter Heidtmann)와 2020년 본 교단 EMS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향후 EMS 프로젝트 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2021. 2. 25일에 온라인으로 회의하였습니다.

해외동역교단들의 총회를 비롯한 행사에도 참석하며, 세계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일본예수그리스도교회(JCCJ) 제71차 총회가 2021. 3. 19일에 일본 고베에서, 대만장로교회(PCT) 제66회 총회가 대만 신주에서 열리나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할 수 없어 축하서신을 보냈습니다. 헝가리개혁교회(RCH) 총회장 비숍 이슈트반 서보(Bishop. Dr Szabó István)가 지난 18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함에 따라 본 교단 총회장 감사패를 헝가리개혁교회 총회로 본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 정재화 선교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미국장로교총회(PCUSA) 세계선교부 동아시아지부 담당자였던 임춘식 목사가 사임하고 김지은 목사, 이은주 목사, 한명성 목사가 사역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장로교총회 세계선교부가 요청한 한국 내 미국장로교 해외재산파악에 대해 업무 지원하였습니다. 필리핀기독교교회협의회(NCCP)로부터 에큐메니칼운동가 롬멜 리나톡(Dr. Rommel Linatoc) 박사의 긴급수술 재정지원요청을 받아 한국에큐메니칼연구원(KIFE)과 함께 미화 5천1백불을 모금하여 지원했으며, 일본그리스도교단(UCCJ) 파송 선교사로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새문안교회에서 사역했던 낙운해 목사가 사임하였습니다.

6.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책

본 교단은 8월 첫째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지키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 및 전문위원, 상담소장, 전문상담사들이 교단 내에 이단사이비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정확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슬람교대책위원회와 연합하여 지역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와 협력하여 양국 간의 이단대처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관계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00회기부터 시작된 이단상담사 교육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활동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7. 전도와 교회개혁, 건강한 교회와 생명목회 형성 및 교회동반성장사업

총회는 지역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염두에 두어 기존의 전도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언택트 시대를 전제한 새로운 전도신학 및 교육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전도학교”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 전도훈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으나 향후 커리큘럼 정비를 통해 시대적합성을 높인 훈련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부흥성장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도 방향성을 살피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총회교회개혁훈련을 통해 1,554가정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이번 봄에 제25기 총회교회개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료한 개척교회 목회자 및 교회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목회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개척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는 개척교회 연령을 60세로 제한해 달라는 수임안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생명목회 지원을 위해 교회력에 따른 목회달력을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배학교, 기도학교, 상담학교 등 다양한 목회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노회의 역량 강화 및 목회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현상 변화에 대한 신학적 진단과 해석 및 다양한 미래 목회패러다임을 연구하고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예배, 전도, 선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분과는 공유교회와 미래목회에 대하여, 전도분과는 코로나 19가 전도에 미친 영향 및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도의 방향에 대하여, 선교적교회 분과에는 이중직에 대한 신학의 정립 및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인해 다양한 선교현장의 선교의 문이 닫혀있어 청소년 학원선교, 병원선교, 직장선교 등 다양한 선교 영역에서 새로운 선교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각 선교 영역마다 비대면 선교에 대한 연구 및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사역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05회부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업무가 농어촌선교부에서 국내외군·특수선교처로 이관되었습니다. 교회동반성장사업은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은 2021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노회와 지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하는 노회와 지원받는 노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통합적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에는 교회동반성장사업 2차 3개년(2019-2021) 3년차에 접어들어 새로운 3차 3개년 준비를 위한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연구 중에 있으며, 5월 중 4개 권역으로 지역별 선교대회 및 간담회를 통해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동반성장사업을 통해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정책 시행에 각 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군 선교, 경찰·교정·소방선교 사역 활성화

군선교 사업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핵심 사역이 ‘군선교’라는 분명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군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내·외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69개 노회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군선교 후원 창구를 총회 군선교후원회로 단일화(제99회 총회 결의)하여,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군선교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군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군선교사역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군선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목회와 선교 분야 우수 강사들을 초빙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임 군종목사들에게 신학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이론과 선교현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계속교육을 통해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연대급 부대 군선교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의 필요’에 부합하는 후원체계(군종사관후보생 장학사업, 현역 군종목사를 소속노회와 후원시스템 강화, 지역 교회나 노회와 1:1 자매결연)를 구축하고, 현장에 있는 군선교사역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여성군종목사가 현장에 배치되는 계획에 따른 여성군종목사 인력 모집을 적극 힘쓰고 있으며 우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위한 ‘군선교학 과목’을 개설(장신대, 2018년)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군종사관후보생 장학금지원(제98회 총회결의 / 총회50%, 학교50%)을 향상시켰으며, 총회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 및 연세대, 숭실대, 한남대에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목사로 임관할 때 타교단과 비교하여 장기 복무와 진급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목사고시 및 안수시기를 앞당겨 대위로 임관하도록 하는 것과, 군종사관후보생이 소속한 노회가 사고시 적시에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여 군종목사로 임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가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교정·소방선교는 권역별로 선교방안을 연구하고, 선교활성화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총회교정선교후원회를 재정비하였고, 총회소방선교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임원간담회, 워크숍, 정책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찰·교정·소방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경찰·교정·소방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목, 소방목사, 교정교역자들을 노회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목, 교정위원, 소방위원들을 확보하고 위촉하였으며, 사례집들을 출판하여 경목과 교정사역자들의 현장을 알렸습니다. 또한 총회소방선교협의회를 조직하여 각 노회 소방담당목사를 세워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난현장방문과 소방서 방문, 소방공무원 예배는 자제하였지만 온라인 선교에 주력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지원사업과 교종제도(종무관)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찰·교정·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해 인력자원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9. 해외·다문화 선교처 - 총회 세계선교 전략수립 및 해외 선교사 파송, 관리

총회 세계선교부는 2021년 3월 5일 현재 806가정 1,532명의 선교사를 88개국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및 인선을 통하여 일반 목회자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한인 디아스포라, 에큐메니칼 협력 교단, 타문화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105회기 세계선교부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총회-노회-교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입 선교사들

에 대한 멤버케어방안과 선교현장의 변화를 총회 세계선교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아감으로 현장중심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 현지선교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현장의 건전한 교단과 선교협의회를 통한 에큐메니칼 선교협력 확장, MK캠프를 비롯한 선교사자녀(MK)사역의 확대, 그리고 해외한인교회가 현지선교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한인교회를 활성화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선교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아 해외와 국내의 연결선상에서의 총회 선교의 정책적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사역창구일원화와 재정 창구 일원화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 선교학 교수, 선교사들과 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선교연구위원회가 수시로 모여 선교의 전반적인 로드맵, 선교사 멤버케어, 선교사 재산관리, 미래 선교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교회교육 강화와 정부 지원을 통한 신앙교육 확대 및 훈련원 활성화

총회 교육훈련처는 교육자원부와 훈련원이 통합되어 업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부의 업무로는 제95회기부터 지금까지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으로 교회교육의 중요성, 신앙교육 대 잇기, 평신도자원봉사 교회학교 지도사제도 등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총회창립100주년기념공과인 GPL공과’개발, ‘GPL + (플러스)공과’ 개발에 이어 ‘GPL S(스페셜)공과’를 개발하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재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회와 가정의 유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자원부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돕고자 다음세대증장기대책위원회를 TF팀으로 구성하고 오늘의 교회학교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집중탐구하며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또한 국가 여성가족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 교회에서 청소년의 인성과 교육을 위한 대안 활동으로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는 ‘청소년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와 학생들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도록 고안한 신앙성품교육과 상처 회복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또한 본 교단이 90회기(2005년) 총회가 교단 신학의 정체성 확립과 신학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 결의한 ‘한국장로교 표준주석’이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훈련원 업무로는 교단에 소속된 지도자의 지속적인 영성훈련과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코로나 19이후에 걸맞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의 교육훈련과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총회-사업노회의 기조에 따라 첫째, 목사·장로계속교육 훈련사업으로 목사계속교육은 ‘총회5개 권역훈련원’과 협의하여 5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장로계속교육은 교단 안에 있는 68개 노회, 평신도기관과 전국장로회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개발 활성화교육 훈련 사업으로 (담임)전도사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와 전국전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목사 및 피택자훈련과정, 목사임직자훈련, 교리교육 교재개발 등 노회-지교회의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총회전문대학에서는 행정대학과 영성대학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외협력사업을 통해 해외목회사 훈련원과 자매결연하여 선교지의 현지 담임목사들의 목회에 도움이 될 목사계속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성훈련원 사랑의 동산과 협약하여 영성훈련 그리고 스테반돌봄사역원과 협약을 통하여 노회훈련원 및 지교회에서 보다 나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내 약자지원 및 대사회적 책임수행, 국내외 재해구호 사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020년을 관통하여 장기화되면서 105회 상반기 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강원도 산불 구호 마무리, 2020년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교회에 대한 지원, 대사회적 사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회본청 앞에서 진행 중인 중대기업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사회봉사부장과 사회문제위원장이 위로 방문하였고 이후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경제양극화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사회적경제 3대 종교행사 기념식을 2020년 10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19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3대종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내용 : 우수기업포상, 3대종교 공동행사 공동선언 및 희망박스 전달(기독교-그룹홈(쌀), 가톨릭-의료진(쿠기), 불교-차상위계층(반찬))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총회 사회봉사부와 노회 사회봉사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사랑으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하여 30개 노회에 50,5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으로 노숙인 거리성탄예배를 13개 지역 18개 노숙인 쉼터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노숙인복지회에 30,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총회 임원회 중심으로 영등포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인 햇살보금자리방문하여 격려 및 기도 후, 내복 등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30일 1차 총회대응지침을 발표한 후 2021년 1월 13일 제18차 총회대응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하여 1차 모금을 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노숙인 지원, 자립대상교회 지원 등을 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의 위기에 있는 자립대상교회 지원을 위하여 2차 모금 중에 있습니다. 2021년 3월 8일 현재 1460개 교회가 490,294,700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발생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와 행정 등 교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 발생한 폭우 피해교회 지원을 위하여 1차(9.24) 30개 노회 118개교회에 348,000,000원, 2차(10.23) 4개 노회 18개 교회에 59,800,000원, 3차(11.12) 3개 노회 6개 교회에 16,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구호(730개 교회/ 구호현금 810,874,758원)를, 2020년 11월 5일 총회 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속초농아인교회 입당예배를 드리고 임시시설 사용가구에 1천만원을 지원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부와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이 2021년 2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환경지도사 양성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단 내 여러 신학교에도 홍보하여 확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은퇴목회자 지원과 자립대상교회 화재피해 및 중병 지원, 사회선교지도자 과정, 생태정의 소책자 발간 등 기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노회 사회봉사부 총무단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노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교회 내 약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농어촌선교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해 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 단체로 3,000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가 제96회기부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4개 지역별 농어촌목회자협의회 및 각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가 조직되어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선교부 9개 산하기관들이 모여 농어촌선교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자 ‘총회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회장 전 세광 목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어촌교회와 농어촌 지역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목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00회 총회에서 조직을 허락받은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가 조직된 후 ‘세움과나눔’ 사업단을 조직하여 생명의 농산물을 공정한 가격에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치파머스(<http://smartstore.naver.com/gachifarmers>)’라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온라인 직거래장터(<http://www.onlife.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문을 연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의 첫 번째 오프라인 카페인 ‘카페 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온을 통한 생명의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으로 농어촌교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에서 공정하게 판매 될 수 있는 판매망 활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의 첫 단계입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정보교류, 인적교류, 강단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함께 상생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전신학대학교에 농어촌 마을목회 전문사역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농귀촌상담소 운영세미나 실시 및 21곳의 예정귀농귀촌상담소를 개소하였고, 상담소 간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예정귀농귀촌상담소 협의회를 조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귀농귀촌상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농어촌목회의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남북한 통일선교 노력

총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선교대학원(1년 과정, 105회기 현재 제11기 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연대의식 강화 및 북한선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통일 후 북한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탈북민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 활성화와 통일의식 저변확대를 위한 노회별 북한선교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14. 총회유지재단

총회의 법인행정과 재산관리 실무부서인 총회유지재단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시설 운영관리와 더불어 총회회관 운영관리의 책임을 맡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장기화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기념관 또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누적되어 이를 타계하기 위해 6층 기도실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 등 빠르게 대처하여 관리 운영 정상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및 사용자분들의 편의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후된 본 기념관의 곳곳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기도와 도움으로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을 건립하여 현재 총회 및 관련

기관에서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을 위해 쓰인 재정에 비해 건축헌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총회회관 건축비 충당과 노후된 본관의 외벽보수, 창호교체 등의 리모델링 및 총회회관 2층에 총회 역사관 공간 마련, 구선교사 사택 재활용을 위한 제반 준비와 이에 따른 기금마련에 더욱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회와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5.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출판사인 한국장로교출판사는 민족복음화 100주년을 맞아 비전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교단 교회들을 섬기며, 총회재정에도 기여하는 성경찬송가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교단 산하 68개 노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책도서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GPL-S 공과 교재(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를 보급하고 있으며,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신학도서 및 평신도들의 신앙을 위한 기독교 출판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출판시장 속에서도 좋은 양서들을 출판하여 기독교출판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6. 총회연금재단

총회연금재단은 2020년 12월 말 현재 16,626명의 가입자와 약 5,750억 원(2020년 12월말 가결산 기준)의 자산을 보유한 개신교 최대 연금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1,175여명의 은퇴 목회자에게 매달 약 24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회연금재단은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단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성장 및 저금리 시대에 투자의 다각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금가입자회 및 수급자회와 운명공동체로서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재단으로서 신규가입자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연금납입을 중단한 가입자들의 조속한 납입 재개와 개교회의 납입금 50% 지원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연금기금의 내실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16,626명의 가입자 뿐 만아니라 100세 시대 ‘목회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합니다.

17. 지구촌의료개발기구 활동

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는 제3세계 가난 질병 퇴치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 협력 사역을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전문화 등 협력선교, 구호개발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농어촌 벽지의 170만여 명의 결혼이민가정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문화가정 의료협력센터>를 개원하여 이동 진료, 예방, 상담, 교육사역에 협력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 나눔 운동 사역개발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역, 단둥·훈춘지역에 기반을 두고 북한 어린이, 영유아 영양식 제공과 나진·선봉지역에 세워진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산원 등에 의약품, 의료기자재, 식량, 의료진 파송 등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의 기관과 북한장애인 의료개선 협력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협력하여 아세안지역 의료지원사역(미얀마 난민지원, 국경지역 재정착 마을만들기, HIV/AIDS 퇴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병원선교회와 협력사역으로 동남부아프리카 보건의료협력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18. 총회문화법인 사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목회를 지원하고 문화의 일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은 크게 ‘문화이음’과 ‘문화나눔’으로 나눕니다. 먼저, ‘문화이음’에서는 ‘문화정책’과 ‘문화네트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에서는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과정인 ‘문화목회콜로키움’이 2012년 시작되어 2020년까지 총 8기 117명을 배출하여 문화목회의 인적자원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문화목회간담회 허브’는 목회자와 문화예술전문가가 만나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통함으로 문화목회의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목회 이음세미나’는 당해에 일어나는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신학자, 일반학자,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목회연구’는 2016년 ‘문화목회 현황보고서’, 2017년 ‘문화목회를 말한다(도서)’에 이어, 2019년 ‘문화목회를 그리다(도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책은 2020년 세종우수도서(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웹진 ‘월간 문화목회(2020.7.10.창간)’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을 목회와 신앙의 현장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예배와 문화목회 정책을 제시하고, 노회 문화선교위원회, 문화선교특별위원회, 문화선교담당자, 그리고 문화에 관심 있는 담임목사, 문화담당목회자, 여성문화리더십, 목사후보생,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문화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목회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나눔’의 영역은 빈부격차가 문화격차가 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고,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핸드드립 바리스타 교육, 삶의 적용과정을 결합한 문화양육과정으로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에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으며, 전자간행물인 ‘매거진 허브(2012.11.26.창간)’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와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새참음악회’는 지역교회의 공간(로비, 카페 등)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음악회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인문학 음악회입니다. 이와 함께 퇴근길 직장인을 위한 ‘말랑콘서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꿈통’은 꿈꾸는 소통의 줄임말로써, 숨통(생명), 씹통(휴식), 소통(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나와 너의 정체성,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미래의 비전을 찾아보는 문화예술체험활동입니다. 다음세대를 포함한 구역장 모임, 당회, 노회원 등 전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력에 따른 절기마다 성탄절 앨범, 부활절 앨범 등을 제작하여 저작권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공간과 그 외 일반 문화공간과 상업공간에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종합한 ‘블렌디드’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은 문화의 시대에 교회가 건강한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이 땅에 예수그리스도의 문화를 가득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출판사인 한국장로교출판사는 민족복음화 100주년을 맞아 비전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교단 교회들을 섬기며, 총회재정에도 기여하는 성경찬송가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교단 산하 68개 노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책도서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GPL-S 공과 교재(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를 보급하고 있으며,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신학도서 및 평신도들의 신앙을 위한 기독교 출판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출판시장 속에서도 좋은 양서들을 출판하여 기독교출판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 총회장학재단 보고

총회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96회 총회에서 각 신학대학교로 파송되는 총회파송이사 및 신학대학교 유지이사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도록 결의하였고, 제105회기 현재까지 총 1억 7백 50만 원의 신학대학교 지정장학금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기탁되어 해당 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신학교육부로 하여금 장학금 기탁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105회기 장학 사업으로는 농어촌자립대상교회목회자자녀 장학금으로 2020년 2학기 18개 노회 1천 1백 9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도 농어촌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총회직영 7개 신학대학교에 1천 4백만 원, 4개 기독교대학교에 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의 장학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에서는 제98회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1천만원~2천만원의 장학금을, 청운교회에서는 제99회기부터 매년 1천만 원의 후원 장학금을, 안양제일교회에서는 제104회기부터 매년 4백만원의 후원 장학금을 기탁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뜻있는 교회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21.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실시

2021년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총회산하 전국교회가 차질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9월 중 수도권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종교인 세무교육 및 예산편성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제한 된 상황을 고려하여 강의 영상을 촬영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세정전문가를 배치하여 세무지도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차질 없이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총회는 노회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총회홈피 및 동영상교육 www.pci.kr)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한 총회 상회비 감소 대책

총회 상회비 책정기준이 되는 전국교회 세례교인수 감소 와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노회에 5% 인하 된 제105회기 상회비가 5.4%(237,180,000원) 감소되어 총회 운영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 절약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회헌금’의 총회 정책사업과 노회사업비 지원 기틀 마련

총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원은 상회비와 총회헌금입니다. 이중 ‘총회헌금’은 전액 ‘정책총회’를 운영하는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입니다. 지난 회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1개 노회가 100% 전교회가 참여, 24개 노회가 기준보다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올해는 15억 원의 목표액을 세웠지만 현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각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부문별 예산절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총회헌금 의무제’를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 제101회기부터 시행하여 많은 노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총회헌금 의무제’는 각 노회별로 세례교인 1인당 1천원을 기준으로 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50%를 노회사업비로 지원하고, 기준에 미달한 노회는 차기 총회 상회비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노회산하 교회의 ‘총회헌금’ 참여율이 약 50%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세례교인 평균 1천원이 초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여율 50% 이상 달성을 위하여 산하 교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 사업 실시 현황

가. 감사위원회

1) 조직

가) 임원: 위원장 신영식 장로, 서기 신성환 목사, 회계 박훈 장로

나) 위원: 이상천 목사, 김채옥 장로, 전승남 장로, 김수찬 장로, 김성수 목사, 조병국 장로

다) 전문위원: 안옥섭 장로, 김종철 장로

2) 회의: 전체 회의 3회, 임원 회의 5회, 연수회 1회

3) 제105회 상반기 감사 일정

가) 총회 본부: 2021년 3월 23일(화) ~ 26일(금)

나) 산하 기관

(1) 한국장로교출판사: 2021년 3월 9일(화)

(2) 총회연금재단: 2021년 3월 10일(수)

(3) 한국기독교공보사: 2021년 3월 11일(목)

(4) 총회유지재단: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5)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021년 3월 12일(금) 오후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2021년 4월 20일(화) / 연 1회

(7) 대구애락원: 2021년 5월 11일(화) / 연 1회

(8) 전주예수병원: 2021년 5월 12일(수) / 연 1회

(9)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총회본부 감사 시

(10)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본부 감사 시

(11) 청년회전국연합회: 총회본부 감사 시

(12)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총회본부 감사 시

(13) 총회문화법인: 총회본부 감사 시

(14)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회본부 감사 시

(15) 총회장학재단: 총회본부 감사 시

(16)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총회본부 감사 시

(17)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총회본부 감사 시

다) 직영 신학대학교(연 1회)

(1) 대전신학대학교: 2021년 4월 21일(수)

(2) 호남신학대학교: 2021년 4월 22일(목)

(3) 한일장신대학교: 2021년 4월 23일(금)

(4) 서울장신대학교: 2021년 4월 27일(화)

(5) 장로회신학대학교: 2021년 4월 28일(수)

(6) 영남신학대학교: 2021년 4월 29일(목)

(7) 부산장신대학교: 2021년 4월 30일(금)

나. 교회연합사업위원회

1) CTS기독교TV 임시주주총회

가) 일시: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나) 장소: CTS기독교TV 컨벤션홀

다) 주요 내용: 공동대표이사 변경 - 총회장 신정호 목사(예정통합), 총회장 소강석 목사(예정합동), 감
독회장 이철 감독(기감)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9회 총회

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나) 장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

다) 주제: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

라) 임원 개선

(1) 회장: 이경호 의장주교(성공회)

(2) 부회장: 장만희 사령관(구세군), 이건희 목사(기장) 강희욱 목사(기하성), 채수일 목사(KSCF), 강은
숙 목사(예정), 정승원 청년(루터회)

(3) 서기: 김종구 목사(기감)

(4) 회계: 이천우 목사(복음)

(5) 감사: 조경진 신부(정교회), 박정기 목사(루터회)

마) 주요 내용: 제69회기 주요 일정 허락, 현장 개정, 제69회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허락, 핵심 주제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성, 한국교회 아카데미 협력 방안 논의, 제69회 총회선언문
채택 등

3)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8회 정기총회

가)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다) 임원 개선

(1)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합동)

(2) 상임회장: 한영훈 목사(한영)

(3) 공동회장: 신정호 목사(통합) 외 회원교단 총회장(24개 교단)

(4) 부회장: 김순미 장로(통합), 천환 목사(고신), 임인기 목사(백석)

(5) 서기: 김종명 목사(백석)

(6) 부서기: 조강신 목사(대신)

(7) 회록서기: 김명찬 목사(한영)

(8) 부회록서기: 김순귀 목사(개혁)

(9) 회계: 안옥섭 장로(통합)

(10) 부회계: 김충무 장로(고신)

(11) 감사: 최정봉 목사(개혁총연), 강세창 목사(합동동신), 양성수 장로(합동)

라) 본 교단 소속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장로교발전위원장 변창배 목사, 언론홍보위원장 박진석 목
사, 이슬람대책위원장 이만석 목사

마) 주요 내용: 이사장 및 신임 이사 인준, 제38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4) 한국교회총연합 제4회 총회

가)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다) 임원 개선

(1)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정합동), 이철 감독(기감), 장종현 목사(예정백석)

(2) 상임회장: 신정호 목사(예정통합), 이영훈 목사(기하성), 박문수 목사(기침), 한기채 목사(기성), 박영호 목사(예정고신), 안성삼 목사(예정개혁), 김윤석 목사(예성), 박병화 목사(예정합신), 이상재 목사(예정대신)

(3) 공동회장: 신민규 목사(나성) 외 19개 교단

(4) 감사: 이상규 목사(예정개혁), 박경표 장로(기하성)

(5) 총무: 김일엽 목사(기침), 정성엽 목사(예정합신)

(6) 협동총무: 변창배 목사(예정통합), 고영기 목사(예정합동), 엄진용 목사(기하성), 이용윤 목사(기감), 김종명 목사(예정백석)

(7) 서기: 이영한 목사(예정고신)

(8) 부서기: 김순귀 목사(예정개혁)

(9) 회계: 이강춘 목사(예성)

(10) 부회계: 설봉식 목사(기성)

라) 본 교단 소속 상임위원장 - 평화통일위원장 조재호 목사

마) 주요 내용: 정관 개정, 법인 이사 교체, 상임위원회 배정,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 차별금지법대응위원회, 종교인과세관련전문위원회, 한국교회미래발전위원회, 총회 결의문 채택 등

5) 교회연합사업 기관 공천 및 추천

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 총대: 강은숙 목사(여성대표), 정병주 목사(안양), 박원빈 목사(서울), 박태부 목사(경남)

(2) 실행위원: 류영모 목사, 박세론 청년, 박한규 장로, 배정희 목사, 변창배 목사, 손달익 목사, 신정 목사, 윤석호 목사, 윤효심 목사, 이재혁 청년, 최효녀 장로, 홍성호 목사

나) 한국교회총연합

(1) 총대: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2) 법인이사: 총회장 신정호영 목사(전주)

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 총대: 이재학 목사(울산), 정일세 목사(부산동), 오세정 장로(서울), 송영범 장로(평남), 김순미 장로(서울), 김덕수 목사(경북), 최종호 목사(익산), 신동설 목사(대전서)

(2) 법인이사: 채영남 목사(광주동), 오세정 장로(서울)

라)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총대: 채영남 목사(광주동), 김준영 목사(목포), 장향희 목사(서울관악), 최윤철 목사(영등포), 김진홍 목사(충북), 전태근 목사(서울강북)

다.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1)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및 총회 감사 의견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임안건을 4개 연구 분야로 분류하고, 분과를 조직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라. 에큐메니칼위원회

1) 제105회기 에큐메니칼 관련 행사

가)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WCRC) 동북아시아협의회(NEAAC) 모임

- (1) 일정: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7시
- (2) 장소: 스위스그랜드호텔
- (3) 참석자: 손달익 목사, 이홍정 목사, 최상도 목사, 조주희 목사, 채송희 목사,
정병화 전도사, 이재혁 청년, 변창배 목사, 조성원 전도사
- (4) 주요내용
 - (가) 2020년 WCRC NEAAC 사업 진행 공유

나) 복음선교연대(EMS) 온라인 회의

- (1)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오후 4시
- (2) 장소: 온라인
- (3) 참가자: 디이터 하이드만 목사(EMS 총무), 솔로몬 벤자민 목사(EMS 동아시아
총무),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조성원 전도사
- (4) 주요 내용
 - (가) 본 교단 EMS 교단회비에 대한 논의
 - (나) EMS 2021-2026 안건과 주제 논의

다) 2020-2학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박현장실천 2차 교육

- (1)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오후 3시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이한빛 청년, 김주은 청년, 김민오 전도사, 장신대 교회박현장실천
교육생 4명, 조성원 전도사
- (4) 주요 내용: 본 교단과 협력하는 해외연합기관 사역 소개

라) 세계선교협의회(CWM) 온라인 신학협의회(e-DARE)

- (1) 일정: 2020년 10월 30일(금) ~ 11월 1일(주일)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최상도 목사, 오민우 목사, 김주은 청년
- (4)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신학, 선교, 사역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

마)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아시아에큐메니칼훈련(AEI) 2020

- (1) 일정: 2020년 11월 2일(월) ~ 30일(월) 매주 월, 수, 금
- (2) 장소: 온라인
- (3) 참가자: 박호성 전도사(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바) 복음선교연대(EMS) 2020 정기총회 사전회의

- (1)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 30분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오현선 목사(EMS 실행위원), 최상도 목사(EMS 총대), 이중호 청년
(EMS 청년 부위원),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조성원 전도사
(총회 행정재무처)

(4) 주요 내용

(가) EMS 정기총회 중 열릴 EMS 동아시아지역회의 시, 본 교단 변창배 목사가 교단대표로 영상을 통해 본 교단 코로나19 상황 및 대처 과정에 대해 공유하기로 하다.

(나) 복인도교회(CNI)의 EMS 회원 가입 요청에 대해 적극 지지하기로 하다.

사) 세계교회협의회(WCC) 실행위원회

(1) 일정: 2020년 11월 9일(월) ~ 13일(금)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배현주 목사(WCC 실행위원)

(4) 주요 내용

(가) WCC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건강과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기로 하다.

(나)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21년 2월 WCC 비상실행위원회에서 2021년 6월로 연기된 WCC 중앙위원회 개최 여부와 진행 방식을 논의하기로 하다.

(다) 2개의 성명서(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무력 갈등에 관한 성명서, 유희사태로 지역 공동체들이 파괴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상황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다.

아) 복음선교연대(EMS) 2020 정기총회

(1) 일정: 2020년 11월 12일(목) ~ 14일(토)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오현선 목사(EMS 실행위원), 최상도 목사(EMS 총대)

(4) 주요 일정

(가) 11월 7일(토): EMS 여성총대, 청년총대 사전 회의

(나) 11월 9일(월) ~ 10일(화): EMS 2020-2차 선교위원회

(다) 11월 12일(목) ~ 14일(토): EMS 2020 정기총회

(라) 11월 15일(주일): EMS 총무 디이터 하이트만 목사 취임 예배

(마) 11월 16일(월): EMS 2020-3차 선교위원회

자) 헝가리개혁신교회(RCH) 온라인 총회

(1) 일정: 2020년 11월 18일(수) ~ 19일(목)

(2) 장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 온라인

(3) 주요 내용

(가) 헝가리개혁신교회(RCH) 비숍 이쉬트반 서보 총회장의 헌신을 기억하며, 본 교단을 대표하여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가 은퇴 기념 감사패를 보내고, 본 교단 총회파송선교사 정채화 선교사가 대신 전달하기로 하다.

차)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온라인 세미나(Good Governance)

(1) 일정: 2020년 11월 25일(수) ~ 27일(금) 오후 2-5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카) 에큐메니칼위원회 제105-1차 회의

(1)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1시

(2) 장소: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5층 총회장실

(3) 주요 결의

(가) 위원장에 류영모 목사를, 부위원장에 손운탁 목사를, 서기에 이정재 목사를, 회계에 전학수 장로를 선임하기로 하다.

(나) 전문위원으로 신재식 목사, 금주섭 목사, 이용천 장로를 위촉하기로 하다.

타)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WCR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NEAAC) 2021 청년사전대회

(1) 일시: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8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채송희 목사(NEAAC 총대), 정병화 전도사(NEAAC 총대), 이재혁 청년(NEAAC 총대), 김주혜 청년(장신대)

파) 에큐메니칼위원회 제105-2차 회의

(1)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3시 40분

(2) 장소: 한소망교회

(3) 주요 결의

(가) 복음선교연대(EMS) 스몰 프로젝트(Small Project)를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지원을 받은 뒤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EMS에 추천하기로 하다.

하) 복음선교연대(EMS) 2021-1차 선교위원회(Mission Council)

(1) 일시: 2021년 2월 4일(목) 오후 4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최상도 목사(EMS 총대)

거) 세계개혁신교회커뮤니언(WCR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NEAAC) 2021 온라인 회의

(1) 일정: 2021년 2월 8일(월) ~ 9일(화) 오전 10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조주희 목사(NEAAC 총대), 채송희 목사(NEAAC 총대), 정병화 전도사(NEAAC 총대)

너) 세계교회협의회(WCC) 2021 전반기 실행위원회

(1) 일정: 2021년 2월 15일(월) ~ 17일(수)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배현주 목사(WCC 실행위원)

더) 복음선교연대(EMS) 총무와의 대화

(1)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후 4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디이터 하이트만 목사(EMS 총무), 솔로몬 벤자민 목사(EMS 동아시아 총무),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러) 2021년 에큐메니칼 대화모임

(1)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3시

(2) 장소: 총회 사무총장실

(3) 참석자: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금주섭 목사(장신대), 김주은 청년(CWM 청년총대), 조명미 전도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조성원 전도사(장신대), 최상도 목사(호신대), 최유진 목사(호신대)

머) 세계선교협의회(CWM) 동아시아 총무와의 대화

(1) 일시: 2021년 3월 3일(수) 오후 4시

(2) 장소: 온라인

(3) 참석자: 줄리 심 목사(CWM 동아시아 총무),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

버) 에큐메니칼위원회 제105-3차 회의

(1)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A

(3) 주요 결의

(가) 본 교단 교인들의 에큐메니칼 사역과 WCC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개 책자와 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하다.

2) 제105회기 에큐메니칼 관련 예정 행사

가) 일본예수그리스도교회(JCCJ) 제71차 총회

(1) 일정: 2021년 3월 19일(금)

(2) 장소: 일본 고베

나) 글로벌 에큐메니칼 온라인 기도회 (Global Ecumenical Prayer Service for COVID-19)

(1)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3시(유럽표준시간)

(2) 장소: 온라인

다) 세계선교협의회(CWM) 특별회원교단회의(SMM)

(1) 일시: 2021년 3월 31일(수) 오후 1시(한국표준시간)

(2) 장소: 온라인

라) 에큐메니칼위원회 제105-4차 회의

(1) 일시: 2021년 4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A

마) 대만장로교회(PCT) 제66차 총회

(1) 일정: 2021년 4월 20일(화) ~ 22일(목)

(2) 장소: 대만 신주

(3) 동역교단 대표 인사는 영상인사로 대체

바) 세계교회협의회(WCC) 2021-2차 실행위원회

(1) 일정: 2021년 5월 17일(월) ~ 20일(목)

(2) 장소: 온라인

사) 세계선교협의회(CWM) 회원연례회의(AMM)

(1) 일정: 2021년 6월 15일(화) ~ 17일(목)

(2) 장소: 온라인

아) 세계교회협의회(WCC) 2021 중앙위원회

(1) 일정: 2021년 6월 23일(수) ~ 29일(화)

(2) 장소: 온라인

마.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1)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제105-1차 회의

가)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A

다) 주요결의

(1) 위원장에 류영모 목사를, 부위원장에 노영상 목사를, 서기에 이정원 목사를, 회계에 백성훈 목사를 선임하다.

(2) 전문위원으로 조성돈 교수, 지용근 대표, 황성은 목사를 선임하다.

2)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제105-2차 회의

가)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3시 40분

나) 장소: 한소망교회

3)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제105-3차 회의

가) 일시: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사랑홀

다) 주요결의

(1) 스토리보딩 방식으로 진행하여 수합된 위원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총회 주제적용지침서에 들어갈 총회와 노회, 교회의 실천지침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4)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소위원회 제105-1차 회의

가) 일시: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9시

나) 장소: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

다) 주요결의

(1) 제106회 총회 예정 주제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에 맞추어 총회, 노회와 지역 교회의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다음 회의 때 최종 집필목록과 집필자를 결정하기로 하다.

바. 총회장학재단

1) 총회장학재단 제105-1차 이사회

가)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실

다) 주요결의

(1) 41개 노회가 제출한 제105회기 1학기 농어촌자립대상교회목회자자녀장학생들의 명단이 확정 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다.(평남/온누리교회 후원금 10,000,000원, 안양/안양제일교회 후원금 2,000,000원 포함하여 지급)

(2) 7개 직영신학대학교에 2,000,000원씩 총 14,000,000원을 신학대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11명에게 지급하기로 하다.

(3) 총회산하 기독교대학교 장학생은 기독교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4개(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교(4명)에 2,000,000원씩 총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 가. 전국 69개 노회는 본 교단과 한국교회 운영의 주축입니다. 총회는 각 노회가 산하 교회를 위한 목회지원과 행정을 원활하게 담당하도록 제반 정책사업을 통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니 각 노회도 산하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공동체의 소임을 은혜 중에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총회헌금은 총회의 5개처 운영과 18개 상임부위원회, 9개 산하기관, 7개 직영신학대학교 등 총회와 관련 한국교회의 정책사업을 위한 초석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아래에서 총회는 제105회기 예산을 제104회기 예산과 대비하여 19.4%를 축소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니 총회헌금이 정상적으로 수납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I. 행정사무 부문

1. 정치부

가.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사무국-3862(2020.10.13.))

- 1)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 전북노회장 이동춘 장로,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 순천남노회장 이성재 목사,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 용천노회장 하충렬 장로가 제출한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정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총회 임원회로 반려(이첩)하기로 결의하다.

나.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사무국-3862(2020.10.13.)) 및 수임안건 처리 재보고 요청(사무국-4202(2020.11.13.) - 총회장(서기))

- 1)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 전북노회장 이동춘 장로,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 순천남노회장 이성재 목사,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 용천노회장 하충렬 장로가 제출한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재론 동의 없이(장로회각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 결의된 안건으로 이 수습안에 근거해서 현재 수습이 이행중에 있으므로 본 정치부에서는 무효와 철회건을 다룰 수 없어서 총회임원회로 반려하기로 결의하다.”
- 2)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립해 달라는 건은 실사 후 결정하기로 하되 정치부 차기 회의시 실사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함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서기 윤태현 목사가 실사보고 후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하되 봄노회 까지는 분립하기로 하고 조건부 허락하기로 하다.”

다. 제104회기 정치부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재무회계국-69162(2020.10.15.)-총회장(감사위원장))

- 1) 총회 규칙11조(부서의 임무)에서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임무와 업무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서 간 업무 중복이나 상충되지 않도록 이첩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잘 시행하도록 하기로 하다.

라.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사무국-3862(2020.10.13.)) 및 수임안건 처리 재보고 요청(사무국-4202(2020.11.13.) - 총회장(서기))

- 1)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립해 달라는 건은 실사 후 결정하기로 하되 정치부 차기 회의시 실사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함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1.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사무국-3862(2020.10.13.))과 “수임안건 처리 재보고 요청(사무국-4202(2020.11.13.))”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통지한 수임안건 처리 재보고 요청건 중 서울서남노회 분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가.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립해 달라는 건은 총회 정치부 실사위원의 실사보고 및 노회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노회 분리 요건은 미충족되나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영광과 노회의 화평과 일부 목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분립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서울서남노회 분립 교세 현황

서울서남노회(잔류노회)				
교회 수	완전 당회	준 당회	당회 합계	비고
131개	45개	4개	49개	
목회자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기도처)	기관선교유학
292명	132명	86명	37명	23명
교인 수	세례교인	장로		
39,613명	24,161명	226명		
서울강서노회(분립노회)				
교회 수	완전 당회	준 당회	당회 합계	비고
51개	24개	7개	31개	준당회2개는 노회 후 임직과 고시 후 임직할 교회입니다 (행복한, 보광교회)
목회자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기도처)	기관선교유학
161명	51명	88명	8명	14명
교인 수	세례교인	장로		
25,213명	19,194명	146명		

2) 분립조건

가)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분립 요건인 헌법 제73조 1항(30개 당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한다.

나) 분립 후 지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은 양 노회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다) 가칭 강서노회의 노회 상회비 납부 건은 정치부 105-4차 실행위원회 결의 후 즉시 총

회 계좌로 입금하되 분립 절차가 완료되면 정치부장 허락하에 서울서남노회로 이체한다. 단 서울서남노회가 분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칭 강서노회로 귀속한다.
라) 가칭 강서노회에서 제소한 제 소송건은 총회 임원회의 분립 결정 후 즉시 취하한다.

나. 다음과 같이 노회분립을 위해 당회 조직교회 수를 개정 청원하기로 하다.

현행	개정안	비고
헌법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헌법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u>당회 30처(조직교회)</u>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u>당회 25처(조직교회)</u>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당회 30처 --> 당회 25처 로 수정 현실적으로 노회분립을 위해

2. 규칙부

가. 분과 조직 및 분과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1분과 / 분과장 : 김민수 목사 서기 : 남삼욱 목사

위 원 : 심태식 목사 민덕규 장로 김의경 장로 장병섭 장로

2분과 / 분과장 : 최수남 목사 서기 : 정일세 목사

위 원 : 정창환 목사 조인희 장로 신중식 장로 손태원 장로

나. 총회 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의 선임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성명	노회	교회	경력
김성철 목사	서울서북	산성	전(제104회기)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	서울서남	갈릴리교회	제101회, 102회 규칙부장 제103회기, 104회기 전문위원
김연현 목사	전북동	구락	제102회기, 제103회기, 제104회기 전문위원

다. “사무국-3776 / 서류 이첩(2020.10.5.)”은 규칙부 업무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 1)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48-93호 / 제105회기 총회 재판국장 선출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2020.9.29.)”
- 2) 경기노회 수원상일교회 강흔성 목사(총회재판국원)가 제출한 “총회재판국장 선출에 대한 규칙해석 질의(2020.9.29.)”
- 3) 천안아산노회 생명샘동천교회 박귀환 목사(총회재판국원)가 제출한 “총회 각 부·위원회 임원 선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2020.9.29.)”
- 4)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선임 및 총회재판국 임원선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중 질의 2)
- 5)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중 질의 2)

라. “사무국-3856 / 제105회 총회 수입안건 통지 및 시행 요청(2020.10.12.)”건 배정

1) 1분과

- ①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
- ② 총회 산하기관 정관 지침으로 “총회 산하기관(단체 및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필수 포함 사항 지침(안)”을 총회 산하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한 건 후속조치(제 104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4-2차 회의시 결의 - 총회산하기관과선교지재산 및 일신기독병원연구위원회 청원사항)는 한 회기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
- ③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한 회기동안 연구, 검토하여 제 105회 총회에 상정한 제 규칙, 정관 제정 및 개정(안)을 제 106회 총회에 상정하는 건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매년 단임으로 배정되어 선거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도별 공천하여 일만한 선거관리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결의)

2) 2분과

- ①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미가입자는 총회부총회장과 총회 임원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
- ②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이 재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년 10억으로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
- ③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지급에 있어서 연령별 지급안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
- ④ 총회공천조례 중 총회연금재단 감사 공천을 전문인(공인회계사)으로 공천하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공천위원회 보고서 결의)
- ⑤ 제101회 교단총회에서 평신도지도위원회를 ‘평신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산하 단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명칭을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평신도위원회 보고서 결의)
- ⑥ 세계선교부 행정부 명칭을 ‘해외·다문화선교처’에서 ‘세계선교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세계선교부 보고서 결의)

마. 추가경정예산 1,4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바. 총회임원회가 전문위원 선임 청원을 일부 허락함.(안옥섭 장로, 김연현 목사)

사. 총회 제2인사위원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121 / 총회 전산홍보팀 故 이상원 과장에 대한 명예퇴직 처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2020.11.9.)”은 ‘전산홍보팀 故 이상원 과장의 순직예우 및 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적용에 대하여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및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로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에 규칙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다.

아. 총회 임원회에 전문위원(고백인 목사 / 대전서노회, 제101회기 헌법위원장) 선임을 청원하기로 하다.

자. 규칙 질의 12건 해석

- 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최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같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을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최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최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4)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29 / 질의의 건(2020.9.15.)”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같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1 : 정기노회시까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2 :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하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41 / 질의의 건(2020.10.7.)”

해석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부터 후보자이다.”

질의 내용 : 본 충남노회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아래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

- 6)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선임 및 총회 재판국 임원선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가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손왕재 목사(갈릴리교회)가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규칙해석 질의 의뢰를 하여 노회가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해석을 청원합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가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가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가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01호 /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 건(2020.10.28.)”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에 따르면 된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원로장로) 1항 2항 :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질의 내용 : 군산노회 소속 양무리 교회에서 보내온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에 대해 불임과 같이 질의 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교회는 2020년 8월 2일(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 2명의 명예원로장로를 추대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2명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재직 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씩 재직하고 은퇴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교회 기여도와 신앙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명예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없지만 명예직이므로 본 교회는 2020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교회정관 제11조 6항과 7항, 8항에 근거하여 명예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추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여 총회 규칙부에 이 건을 질의하오니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 “행정·재무처-467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1.15.)” -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056호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정년에 대한 질의(2020.11.05.)”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향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향존직) :

향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향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26.~29)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는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영등포노회장 광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19호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

해석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으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 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전국연 제80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 21일(목)입니다.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후보자가 소속지노회연합회에서 총회개회 45일 전까지 전국연에 보고한 파송 총대에 선임되지 못한 회원에게 피선거권(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한 회칙과 달리 선관위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파송총대 변경을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칙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중, 소속 지노회연합회에서 결의된 추천서가 아닌 회장 개인명의로 발급한 결격추천서를 본회 선관위에서는 임시로 접수하고 1,2차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소속노회 연합회(임원회)에서는 백OO장로를 전국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 기일을 도과(14일)하면서 까지 후보자로 등록처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가요?

▶관련규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6조(등록 및 등록서류)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지노회연합회추천서 1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수석부회장 후보는 해당지역 각 노회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부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 ‘제3조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최 60일전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개최 60일전에 해당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11) 김제노회 신양교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0-1201호 / 규칙해석(2020.12.29.)”

해석 : 해 노회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헌법 제 2편 11장 노회 75조 노회 임원선출의 해석을 구합니다.

김제노회 규칙 선거조례 제 4장 임원선거 제 8조 1항과 5항의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1 :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노회장 선출이 가능한지와 오후 회의 속개 후 정족수 미달 시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회원권을 회의 참석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노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과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하거나 한 것이 정당한지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되자 자격조건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12)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가입자 21-03호 / 정기총회 개최 질의의 건(2021.1.21.)”

해설 :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2월 22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대는 약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만 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불가항력으로 총회 회집이 불가능할 때, 총회가 정상회집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는 자동 연장이 되는지?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2) 2월중에 총회 회집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과반) 총대의 동의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축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가령 노회대표 68명+임원=약90명)

3. 재판국

가. 재판 사건 24건을 판결(결정) 선고하다.

1)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57호)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한다.

2. 상고인 이용혁, 최규희, 이재룡, 장병기, 고은철, 구탁서, 백종찬, 안대환, 안장익, 이신성, 이옥기, 이현성, 장원기(이상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 원심판결의 표시(서울동남재판2017-2호)

- | |
|--|
| 1. 피고인 이용혁, 최규희, 이재룡, 장병기는 서울동남노회 목사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
2. 피고인 고은철, 구탁서, 백종찬, 안대환, 안장익, 이신성, 이옥기, 이현성, 장원기는 견책에 처한다.
3. 재판비용은 면제한다.
4. 판결선고일 : 2018년 5월 25일 |
|--|

2) 경안노회 동부교회 김홍주 성도가 동부교회 최경수 장로 외 6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제103-47호)

주문 : 1.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합의문)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
(2020.7.24.)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3) 서울서남노회 김임두 목사 외 14인이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무효
확인 소)”(사건번호 : 제103-49호)

주문 : 1. 2019년 4월23일 소집된 제92회 서울서남노회가 결의한 노회분립안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4) 영등포노회 광명교회 차상환 장로가 광명교회 김주식 장로 외 5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
분에 대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07호), “재차재항고
건”(사건번호: 제104-07-1호), “재재차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07-2호),

주문 : 1. 영등포노회 광명교회 차상환 장로가 광명교회 김주식 장로 외 5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0년 12월 12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5) 영등포노회 광명교회 차상환 장로가 광명교회 장영길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
분에 대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08호), “재차재항고
건”(사건번호: 제104-08-1호), 재 재차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08-2호)

주문 : 1. 영등포노회 광명교회 차상환 장로가 광명교회 장영길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재차 재항고
건”, “재재차 재항고건”(병합)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0년 12월 12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300만원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6) 서울서남노회 꿈이있는교회 조남욱 안수집사가 꿈이있는교회 윤태성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09호)

주문 : 1.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7) 여수노회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당선무효소
송)”(사건번호: 제104-20호)

주문 : 1. 여수노회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당
선무효소송)” 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1년 1월 25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8) 부산남노회 화곡교회 김원곤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제 104-24호)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한다.

2. 상고인에게 무죄로 선고한다.

3.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합의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4. 재판비용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 원심(부산남노회재판국 부남재 2020-01) 판결의 표시

1. 주문

피고인 김원곤에게 면직 및 출교를 선고한다.

재판 비용은 노회에 귀속한다.

2. 판결선고일 : 2020년 5월 22일

9) 평남노회 로고스교회(대표 정희국 목사)가 서울서북노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시몬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 104-25호)

주문 : 1. 이 사건 재항고 신청을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된다.

10) 대구서남노회 권영국 목사가 대구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취소 소송)”(사건번호: 제 104-28호)

주문 : 1. 대구서남노회 권영국 목사가 대구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취소 소송)”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0년 10월 22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11) 용천노회 시냇가푸른숲교회 김성국 목사가 용천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재판기록 포함)”(사건번호: 제104-30호)

주문 : 1.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용천노회재판국 원심판결표시(용천 제162-1호)

주문 :

1. 피고인을 시무해임 6개월에 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판결선고일 : 2020년 6월 11일

12)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시환 안수집사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 이태종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간주에 대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 104-31호)

주문 : 1. 피고소인 이태종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6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황명

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오경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각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 중 200만원은 서울강남노회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100만원은 재향고인(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 13)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시환 안수집사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 이태종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간주에 대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차 재향고건”(사건번호: 제104-31-1호)

주문 : 피고소인 이태종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6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황명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죄과를, 피고소인 오경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의 각 죄과를 적용하여 재차 기소할 것을 명한다.

- 14) 경남노회장이 제출한 “가중처벌 의뢰 요청서(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이 제출한 경남노회 창녕시찰 가나안교회 이종훈 목사에 대한 가중처벌 의뢰)”(사건번호: 제104-34)

주문 : 1. 원심 판결(예총재판국 제103-45호)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종훈 목사는 정직 2년과 출교에 처한다.
※ 총회재판국 판결표시(예총재판국 사건 제103-45호)

주문 :
1. 예총재판국 사건(상고건) 제103-15호는 파기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3. 합의 불이행시 가중처벌로 다스릴 수 있다.
판결선고일 : 2020년 3월 17일

※ 총회재판국 판결표시(예총재판국 사건 재재심 제103-16호)

주문 :
1. 예총재판국 사건(상고건) 제103-15호는 파기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3. 합의 불이행시 가중처벌로 다스릴 수 있다.
판결선고일 : 2020년 3월 17일

※ 총회재판국 판결표

주문 : 1. 피상고인 이종훈 목사는 정직 6개월에 처한다.
2. 피상고인 이종훈 목사는 상회총대파송정지 2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일 : 2019년 5월 14일

- 15) 안양노회 명학교회 김영덕 장로 외 1인이 안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제104-35호)

- 주문 : 1.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6) 서울서남노회 응곡교회 주성수 목사 외 4인이 서암교회 한요섭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4-36호)

- 주문 : 1. 서울서남노회 응곡교회 주성수 목사 외 4인이 서암교회 한요섭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1년 1월 15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17) 대구동노회 대구칠곡교회 안영재 부목사가 대구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제105-01호)

-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상고인 안영재 목사를 시무해임 3개월 처한다.
3.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원심판결의 표시(대구동노회 재판국 사건번호:2020-2)

주문 : 1. 피고소인 안영재 목사를 시무해임 6개월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대구동노회에 속한다.
3. 대구칠곡교회 당회는 재판결과를 당회록에 기록하고 교회주보에 게재한다.
판결선고인 : 2020.9.23.

18) 포항남노회 포항중앙교회 손오익 성도가 포항중앙교회 치리회장 손병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장로 피택 무효소송)”(사건번호: 제105-04호)

- 주문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포항중앙교회 2020년 6월 7일 실시된 공동의회 결의(정홍재, 김타선, 변영민, 장순복, 김치국, 전점숙, 박희율, 장문식, 조원호의 장로당선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정홍재, 김타선, 변영민, 장순복, 김치국, 전점숙, 박희율, 장문식, 조원호는 포항중앙교회 시무장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원심판결의 표시(포항남재20-1호)

주문
1. 손오익 씨가 제출한 “포항중앙교회 장로 피택 무효 소송” 건은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판결선고일 : 2020년 10월 13일

19) 평양노회 천래교회 김화중 집사가 천래교회 김운길 장로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간주에 대

해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5-05호)

- 주문 : 1. 피고발인 김운길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12항, 제14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 중 200만원은 평양노회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100만원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20) 서울강동노회 성낙은 원로목사(태평제일교회) 외 5인(양지태평제일교회)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강동노회 양지태평제일교회 성낙은 원로목사 외 5인이 서울강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64호)에 대한 재심청구](재심 사건번호 : 제103-03호)

- 주문 : 1. 재심청구인 성낙은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재심청구인 성낙은 원로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한다.
3. 재심청구인 5인(이용하, 신수길, 김용균, 김병용, 김성진)의 청구는 기각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 재심대상판결 예총재판국 판결 표시(사건번호 제102-64호)

- | |
|----------------------------------|
| 1. 주문 : 상고인(성낙은 외 5명)의 상고를 기각한다. |
| 2. 판결선고일 : 2018년 12월 11일 |

※ 서울강동노회 원심판결 표시(서울강동노회 기소위 2018-002호)

- | |
|--|
| 1. 주문
성낙은 : 면직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이용하 : 면직1년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신수길 : 면직 출교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김용균 : 견책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김병용 : 면직 출교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김성진 : 면직 출교에 처한다. 예납된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
| 2. 판결선고일 : 2018년 6월21일 |

21)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17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재심 사건번호 : 제104-02호)

- 주문 : 1. 피고인(재심청구인)에 대한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7호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재심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7호)의 표시

- | |
|--|
| 주문 :
1. 이 사건의 원심판결(예총서울강남노회 사건 제59-207호)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상고인 이종윤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선고일 : 2019. 9. 10. |
|--|

22) 서울서노회 회성교회 양시창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서노회 회성교회 우동화 은퇴 장로 외 4인이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3-3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재심 사건번호 : 제104-08호)

- 주문 : 1.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3-31호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재심청구인 배효원, 장성오, 손수경, 우동화를 출교에 처한다.
3. 피재심청구인 홍표철을 시무정지 1년에 처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3)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강영권 장로 외 5인이 서울서북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사건번호 : 제104-14호)

- 주문 : 1. 서울서북노회가 허락한 2015년 10월 27일 제일영광교회 김건환 목사의 원로목사에 대한 추대 결정을 취소한다.
2. 김건환은 제일영광교회 원로목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4) 평양노회 천래교회 김화중 집사가 천래교회 김운길 장로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간주에 대해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차 재항고건”(사건번호 : 제105-05-1호)

- 주문 : 피고발인 김운길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재차 기소할 것을 명한다.

나.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한 복권 승인 보고

- 1) 사무국-4580 / 황형택 목사 해별 및 복권 승인 요청(2020.12.14.)과 관련입니다.
- 2) 지난 12월 14일(월) 제 105회기 총회 임원회의 주선으로 총회장 입회하에 총회화해조정전권위원장, 총회재판국장, 재판국 서기와 화해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8항에 근거하여 “1)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7호, 판결선고일 2011년 8월 1일,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호, 판결선고일 2011년 12월 8일,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에 대한 건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복권 승인(2020.12.15.)함을 보고 드립니다.

복권 승인 이유 :

1. 기초사실

강북제일교회가 이미 지난 제103회기에 화해 합의하였고(2019.9.11.),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종합의서(2020.12.14.)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화해조정에 따른 황형택 전 목사에 대한 복권을 요청함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해별 승인을 결정한다.

2.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7항, 제8항.

다. 위탁재판 청원 회송

- 1) 평노 제193-14호(2020.12.9.)와 관련입니다.
-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귀 평양노회장이 본 재판국에 제출한 “위탁재판 청원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송하며 귀 노회가 총회 헌법 권징을 준수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 사건들을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2항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의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권징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 관할) 제1항,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제56조(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에서 반드시 노회에서는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권징 제14조(심판사항)에 의하면 노회위탁재판은 총회 재판국의 심판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회는 반드시 상설재판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헌법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권징 제3절(노회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4.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제120조(위탁재판의 청원)에서 당회장의 위탁재판은 총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재판국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제121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에서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붙임 : 평노 제193-14호(2020.12.9.) - 위탁재판 청원.

4. 헌법위원회

가. 헌법 질의 31건을 해석하다.

- 1) 부산노회장 강상국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90-63호 / 헌법 해석 질의(2020.9.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1호에 근거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청목과정을 받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총회신학대학원”은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정기노회 헌의안 중 타 교단 목사로 노회 가입 청원하여 청목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바, 붙임과 같이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인가를 질의합니다.

- 2)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33호 / 질의의 건(2020.9.22.)”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노회 총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노회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노회를 개최하되 최소인원 외에 노회총대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실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노회 회집(출석)

교회”로 지정된 장소로 출석함으로써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노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할 수 있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 방역지침을 완화 할 경우와 노회원 수를 감안하여 해당 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정기노회 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 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 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 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발표하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3)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572 / 총회 재판국 재적 인원 관련 질의(2020.9.1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제척·기피·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에 근거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망, 사임, 은퇴 경우는 재적 국원(15명)에서 제외되지만,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재적 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명)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반드시 보선 충원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재적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에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 2402,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질의내용 : 제104회 총회재판국이 9월 8일 국원 9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중인 사건 2건을 판결하였습니다.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6명이 불참하여 판결 성수가 미달되어 다른 사건들은 처리하지 않았고 판결한 사건 2건은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 재적을 12명으로 기산하고 9명 출석으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참 국원 6인은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체 재판국원 15명의 3분의 2는 10인이고, 국원 10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판결할 수 있으므로 재판국원 9명으로 사건을 판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하니 해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임원회는 제104-13차 회의(2020.9.10.)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준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특정 사건에 대한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의 재적인원을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특정 사건에 대한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의 재적인원을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하여 판결한 절차는 합법적인지 여부

4)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48-88호 / 헌법질의 해석 요청(2020.9.1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5) 제척·기피·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에 근거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망, 사임, 은퇴 경우는 재적 국원(15명)에서 제외되지만,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재적 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명)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반드시 보선 충원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재적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에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 2402,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질의6~9)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6항에 근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에 대한 결정은 재판국이 한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기피 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질의10~11) 기피 신청은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결정되어야 하고 기피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기각결정 또는 절차 미확정, 기피신청 결정 정족수 미달 등) 출석 정족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재판국) 제8조(의결방법) 제1항에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재판국 국원이 15명이면 재적국원은 몇 명인지요

질의2) 총회재판국 국원이 제척 및 기피 그리고 회피되면 재판국의 재적국원에 삽입되는지요

질의3)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10항에 “제척·기피·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 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 제104-10호 및 제 104-33호 소송에서 기피 등의 재판국원 보선 충원 없이 판결한 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질의4) 총회 재판국의 개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5) 총회 재판국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6) 총회재판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7) 기피신청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질의8)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9) 기피신청된 국원이 기피 결정 투표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10) 기피결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을 시, 그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11) 기피결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5)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정치 152-81호 / 헌법 해석 요청(2020.10.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목사 파송의 목적은 학원 전도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학교가 교육부 설립 인가 및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원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학원 전도를 위해 전도목사 파송이 적절하고 (이단 및 사이비 여부 등 판단) 필요한지는 노회가 판단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제주열방대학이 학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요청

질의2) 제주노회에서 제주열방대학에 전도목사로 파송이 가능한지 확인요청

- 6)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정치 152-82호 / 헌법 해석 요청(2020.10.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헌법 정치 제64조에 근거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피택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였을 경우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61명 이전이라도 1인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장로 2인을 피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세례교인 30명이 되었을 때 장로 2인을 피택하지 못하고 1인만 피택하고 추후 세례교인 61명이 되었을 때 장로 2인을 피택할 수 있는지요

- 7) 부산노회장 김수찬 장로가 제출한 “부노제191-07호 / 헌법 질의(2020.10.2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귀책사유가 목사안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고, 본인이나 학교도 행정처리 상 미숙으로 인한 학점부여와 졸업장을 수여함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으로 목사안수는 유효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한다면 목사직의 효력은 문제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학교의 학사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졸업취소 조치이지만, 취소된 해당 학점을 재취득해서 신학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면 이미 받은 목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8)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0-180호 / 전임전도사 교역 경험 인정의 건(2020.10.28.)”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에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26조 제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동법 제2항에 근거 증빙서류는 정치 제5-3호 서식에 의거 시무한 교회 당회장이 전임전도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교단체 및 신학대학의 경우 단체장의 명의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94회기 헌법 해석 63번, 제100회기 헌법 해석 28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 1.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 제5-3호 서식에 의거 시무한 교회 당회장이 전임전도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 노회 관할 지역 내의 대학병원 원목실에서 전임전도사로 2년 사역 후 병원 이사장의 요청으로 원목(전도목사)으로 청빙 받을 경우 전임전도사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전남노회 질의: 직영 호남신대 조교수 경력 인정, 총장 명의로 발급, 2010년 8월 순천남노회 질의: 선교단체나 기관에 시무하던 전도사가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로 청빙될 경우 경력 인정, 청빙기관장이나 선교단체장의 명의로 발급).

- 9) 대구동노회 대구칠곡교회 박경식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청원 요청의 건(2020.11.12.)”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2조에 근거 70세 정년을 교회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65세 조기은퇴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조기은퇴를 거부할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순서에 따라 조기 은퇴를 강제할 수 없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01번,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8번,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1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시무장로의 임기가 총회 헌법에 의해 보장된 70세의 정년을, 교회의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2) 교회의 규약으로 시무장로의 임기를 65세로 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기가 65세가 도과되었을 경우, 총회 헌법에서 보장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할 수 있는지요?

- 10) 부천노회장 안경근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45-7호 / 헌법위원회 헌법 질의(2020.11.24.)”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4조에 근거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상소 후 중도에 취하할 경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상소기간 만료(판결문 접수 후 20일) 후 취하(2016.4.14.)한 경우는 상소기간 만료일(판결문 접수 후 20일)로 확정된다. 판결문 송부는 헌법 권징 제36조에 근거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직출교일(2015.7.30.)로부터 송달일 10일, 상소기간 만료일(판결문 접수 후 20일) 등을 감안할 때 무임목사 해직 판결일(2016.3.11.)보다 선행되므로 면직출교에 의한 복직 절차에 따르면 된다.

질의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총회재판국에 상소하였다가 중도에 취하할 경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최종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이다.

[※참고 : ① 국가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제1항(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요지(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질의내용 : 질의1) A목사 2015.7.30.일 부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2016. 3.11.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012.4.17.일 담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A목사가 노회에서 복직을 한다고 하면 아래 절차 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① 2015.7.30. 면직출교에 따른 복직(헌법 권징 제134조, 제137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② 2016.3.11. 판결에 의한 2012.4.17.일 무임목사 해직에 따른 복직(헌법 정치 제37조, 헌법시행규정 제19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③ 아니면 한사람에게 면직출교와 무임목사 해직에 따른 두 번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2) 권징 제134조(해별과 청빙)에 따른 해별 절차와 관련하여, 부천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항소하였으나, 2016.4.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상고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국을 부천노회 재판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총회 재판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11)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90호 / 서류이첩(2020.10.2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65번 해석으로 같음하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65번]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2544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및 헌법 해석 초안 유출 경위 조사 요청 (2020.7.17.)” - 사무국-2467 / 헌법해석 보고(2020.7.15.) 중 1번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질의서(2020.5.21.)”, 평남노회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가 제출한 “부전지

상삼교회 (청원서) 추가서류(2020.6.24.)”,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호 / 상삼교회 서기 전형섭 장로(장로들)의 질의 건에 대한 반려 요청(2020.6.3.)”,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29호 / 상삼교회 장로들의 헌법질의에 대한 평남노회의 입장(2020.7.7.)”】건과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청원서(2020.7.15.)”,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4호 /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의 질의에 대한 헌법해석 재고 요청(2020.8.5.)”, 평남노회 상삼교회 교인 김진열 장로 외 76인이 제출한 “호소문(2020.8.6.)” 건

해석 : 질의1)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3호에 근거 상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의2) 사실 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3)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 및 처리에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1명이라도 반대가 있는 안건은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 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빙에 의한 당회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 정한 기간 내에 당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96회기 헌법위원회 54번 해석과 같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 볼 때 평남노회 자료에 김수태 목사가 무임목사로 등재된 사실(2019.10.2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당회장 결원을 전제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2020.3.2.임시당회장:석근복목사) 사실, 2020.4.19. 임시당회장 주재 하에 김수태 목사 전별금 지급(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의한 결과 부결(총투표72명, 찬성1명, 반대61명, 무효10) 된 사실 등, 양측의 문제제기 문건 등을 살펴볼 때 노회가 상삼교회 담임목사 결원을 전제로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무임목사 등재(평남노회, 2019.10.22.) 후 6개월이 지난 후 과거 헌법해석을 몰랐다는 이유로 평남노회 정기노회(2020.5.28.)에서 이를 반복한 것은 노회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김수태 목사는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의 신임을 물어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2) 노회에서 설교목사로 파송한 성홍모 목사(평남노회 은퇴목사)가 본당 2층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임목사가 된 김수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1층 교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질의3) 공동의회(정치 제13장 제90조2항) 사전에 광고하지 않은 안건을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로 공동의회 당일 위원장이 긴급 동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까? (서증7,서증8) 질의4) 제191회기 평남노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지 못하고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의 담임 목사직과 당회장권이 연장되는 것이 시행규정 제33조5항을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2-1) 권리를 구하는 문제는 헌법해석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질의2-2)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65번에 ‘담임목사 유지된다.’ 해석 한 바 없으며,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로 부임한 3년이 되는 해, 6개월 전 성도들에 의해서 시무장로 전원이 노회에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사고당회), 이후 정상적인 당회 기능이 안되어 연임청원 절차를 갖지 못했을 때,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질의자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노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1) 질의자는 해당 노회에 어떤 권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김수태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유지된다.”는 것은 어떠한 해석인가요?

- 12)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478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12.7.)” -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3호 / 헌법해석 요청(2020.11.1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미진 안전은 토의가 미진한 안전을 말하고 상정되지 않은 새로운 안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양노회 보고서에 안전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임원회로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노회 임원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평양노회가 2020년 10월 20일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부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미진안전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폐회를 하였으나, 분쟁이 있는 교회에 수습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서를 올렸기에 노회 폐회 중에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빠른 시일 안에 헌법 해석을 요청합니다.

- 13) 서울북노회장 전일록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5-27호 / 2021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 건 (2020.12.7.)”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후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차기년도 (2021년) 예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하면 된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참고)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시행하여 각 지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2021년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정치 제13장 공동의회 제5항 ②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14) 김제노회 봉남교회 박성규 목사가 제출한 “봉남교회 제 2020-26호 / 헌법해석(전도목사 파송청원과 청빙에 관하여)(2020.12.10.)”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가능하나 단, 자신이 기관장일 경우 기관 임원회(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회가 판단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기관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도 전도목사 파송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재가복지 센터장인 본인이 본인을 청빙할 수 있는지?

- 15) 광주동노회장 김영호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5-19호 /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 질의(2020.12.1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 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파송절차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폐회 중 노회의 정치부가 임시당회장을 선임 후 노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파송해야 하는지?

질의2) 노회 폐회 중 노회의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회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 가능한지?

- 16)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574 / 교회의 온라인 회의 관련 헌법 질의(2020.12.14.)”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국가적 재난사향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경우 지난 제105회 온라인 총회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심히 곤란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 할 경우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 및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전 사전 공지(공지방법 : 후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 / 온라인 회의방법 안내)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난인 코로나19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회장이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3)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최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를 준용하여 개최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한다. 온라인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개최는 회 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최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특히 인사 관련 사항은 헌법 시행규정 부칙 제5조를 적용하고 아울러 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8번, 37번, 49번, 51번, 63번, 71번 참고)다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90 조 제4항에 근거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 (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 번 참고)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 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 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어떻게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 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적용 또는 준용할 경우 당회장의 소 집 권한은 유효한지 여부.

질의3) 비상시국(국가적재난)에 관한 법조항이 현 총회 헌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거리두기 2~2.5단계를 시행하여 주일예배도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상황에서 온라인 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및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서울강동노회 동성교회 김영진 장로 외 2인이 송부한 “총회 헌법질의 관련 보완 자료 송부 (2020.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 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 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분규 여 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판단한 후에 연임청빙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에 근거 정치 제5-1호, 2호 서식 외에는 노회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질의4) 행정소송의 경우는 헌법 권징 제14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4조에 근거 치리회장의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이며 헌법 권징 제154조는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하는 소송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 교회에서 함이 적절하다.

질의3,5~10,12,13) 위임목사의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 근거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7조에 근거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위임식이 없었으면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시무기간은 노회허락일로부터 3년이다. 공동의회 위임목사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담임목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 결과에 대한 해약 결의 또는 번안동의 없이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공동의회 일반결의에 대하여서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위임목사의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출석회원이라 함은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공동의회 일반결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근거 투표당시 재석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행에 의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안건이 아닌 법적요건이 필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를 준수해야 한다. 위임목사 투표 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에 대하여 재석을 확인했어야 하나 그대로 진행하여 출석회원에 대한 정확한 재석수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는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당시 출석회원 456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회 시 출석회원(456명)과 총 투표자(414명)에 차이가 크고 그 기준에 따라 위임목사 결의 정족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되는 상황에서 “총 투표자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 함이 적법하다. 이는 재석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석회원 중 총 투표자수로 결의할 경우 기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석회원: 헌법 정치 제28조, 제44조, 제47조), (총 투표수: 헌법 정치 제41조), (투표수: 헌법 정치 제54조)] 노회는 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개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반드시 승인 결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되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 근거 임원회와 정치부가 폐회 중 할 수 있는 목사청빙결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수 서류에 대한 중대한 하자(관련서류 요건 및 절차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요건이 미비하였다고 하면 보완 요구 및 반려 할 수 있다.

질의11) 위임목사 청빙서에 대한 유효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에 근거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회기가 달라질 경우 위임 투표가 가능하다. (제102회기 헌법해석 1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2020년 봄 노회 전일까지 3년 임기가 만료되는 담임(임시) 목사가 2019년 12월 22일 해 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결의 되고 봄 노회 개최 공고 후,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 승인 요청하였다. 아래 관련 근거 및 헌법질의 해석 등을 근거로 질의합니다. 2020년 봄 노회에서 안건 미 상정되어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없었을 경우, 담임(임시) 목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위임목사 청빙 서식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고 위임목사청빙 청원서 구비 서류 중 청빙서 사본(공동의회 출석 세례 교인 000명 중 000명의 서명)은 법정 규정 양식이 없어,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회원이 투표시에 실제 서명한 '투표인 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비서류 제출 방식에 저촉여부는?

질의3)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11조(2) 시찰 위원회 권한 규정에는 “지교회를 시찰, 협의 지도하며 당회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노회에 제출하며,”로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노회 개최 공고 후, “위임목사청빙 승인요청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찰회에서는 제출된 위임목사청빙승인 요청서의 형식적 사항인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노회에 제출하였는 바, 접수된 후 1개월 이후에 노회 정치부에서 형식적 사항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요?

질의4)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청빙결의방식에 있어서 무효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2절 제142조 제2항에 이하 '무효 등 확인소송'인지 아니면 제3절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인지요?

질의5)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는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질의 해석(목사 위임): 예장총 제86-330호(2002.2.21.)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 및 예장총 제86-457호(2002.3.28.) 총회장이 헌법질의 재심의 요청한 1) 대남노 제 149-34호(2002.2.8.) “목사 위임에 대한 질문의 건”에서 “임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 1항 및 헌법조례 제4장(교회의 직원) 제16조(목사청빙) 1항에 의거 위임목사 청빙을 하였다면,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9조(청빙승인) 1.2항에 의거 청빙승인되어야 하며... 이하 생략...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강행 규정 성격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위임목사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가 청빙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효력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노회의 부작위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면 치유(또는 구제)방법은?

질의6)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정적 미비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보정하여 처리하는 것

이 통상규례라고 봅니다. 더구나 본 건과 관련한 행정소송(무효확인 소) 제기 건은 변론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별 건으로 다룰 수 있는 것임에도 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서를 노회장 명의가 아닌 정치부장의 명의로 “교단총회의 법적, 행정적 미비된 부분(법적 해석 여지가 있음)”의 사유를 들어 접수된 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4.10. 본 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행위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7)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10조 (1) 정치부: 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 목사청빙 ... 장로선택 및 기타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사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의 규정이 있음에도 정치부는 한 교회에 공동의회에 결의된 ‘위임목사청빙서’를 화해조정 이름하에 반려 및 진행한 내용들을 본회의(2020.5.12. 강동노회 회의록)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한 교회의 총회에서 결의되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보고(청빙승인요청)된 우리교회 위임목사청빙서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부의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8)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는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권징 제47조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의 중용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부와 임원회가 재판국과 무관하게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부 명의로 해 교회에 통보할 수 있는지요?

질의9) 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의 없이 결의되어 승인 요청한 ‘위임목사 청빙서’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무효 등 판결 또는 해석이 있기까지는 적법적 추정력이 있어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같은 시기에 ‘무효확인의 행정소송’ 건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본 건을 “교단총회의 법적 미비(법적 해석여지가 있음)”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부 반려행위에 대한 효력은?

질의10) 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의 없이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 결의 건이 철회하는 해약 또는 소멸되기 위하여는 같은 방식의 공동의회의 재결의(변안 결의 포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치가 화해조정 명목하에 정치부로부터 반려된 위임목사청빙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11) ‘질의 9’에서 반려된 위임목사 청빙서가 유효하다면 재 청빙승인 요청은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요?

질의12) 이후 강동노회 정치부에서 화해조정운영절차로서 ‘위임목사청빙승인서’ 반려 후 소송 건 취하 철차를 거친 후, 봄 노회 개최일이 도래하자 화해조정위원 중 1인이 임시당회장 및 제직회장이 되어, 일부 당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공동의회에서 재결의(변안 결의 및 승인 포함)는 없었음에도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제직회를 개최하여 임시목사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하였다.(※ 이후 봄노회에서 임시목사로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결의 건과의 배치 관계로 다수 공동회원이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구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1~9)에 대한 귀 위원회의 종합적인 해석을 기초로 강동노회 정치부
의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과 제직회에서 결의된 임시목사 결의 건의 효력은?

질의13)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방식 질문 ○ 우리교회(당회 및 공동의회)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공동의회
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에 있어서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
한 방법은 헌법 모법에는 규정이 없고[(경남노회장 김형곤 목사 제출 헌법질의
(2008.7.15.) 질의 2) 위임목사 청빙 결의 시... 중략...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
한 방법은 헌법 모법에는 규정이 없어,”)] 우리교회는 아래 관련 근거 1),~5) 내
용과 같이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 장로회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회의규칙,
헌법질의해석, 대법원 판례, 국제법학회 해석,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의 재석파악
즈음에서 출석회원을 투표인 수로 적용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
히 우리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의 직전 재석 파악에 즈음하여 ‘개회인
원이 아닌 실제 투표하는 수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2019.1.12. 원로 장로 추대
결의 시에도 이와 같이 시행, 결의하여 이의 없이 추대한 사례가 있다.
2019.12.22. 위임목사청빙 공동의회 시 의장은 상기 내용 등과 공고내용을 기초
로 하여 결의 직전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설명에서 “오늘 의결 요건은 헌법 제2
편 제5장 제28조 내용에 따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집
계에 따른 결정의 명료화를 위하여 안건 상정 전 회집인원으로 계산된 인원은
결의 시점에 자리에 없을 수 있으므로 2/3 기준은 실제 투표한 인원수로 합니
다.” 라는 발언을 하고, 정식 이의가 없이 진행되었고 종료되었다.

질문 가) 헌법 제2편 제28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에 있어
서 그 출석회원에 대한 해석은?

질문 나) 우리교회 공동의회 결의(투표) 직전 재석 파악에 즈음하여 공동의회 의
장이 그동안 임시당회 결의사항, 공고 시 예배 중 공시 내용, 선관위
회의내용 및 아래 관련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하여 ‘투표 및 집
계에 따른 결정의 명료화를 위하여 앞서 안건 상정전 회집인원으로 계
수된 인원 중 지금(투표 시작) 없는 회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석회원
2/3기준은 실제 투표한 인원수로 계수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진행하였
고, 이의 없이 가결 선포, 종료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동의회에서의 결
의 방법 및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인지 여부?

18)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45호 / 헌법해석 질의서 송부(2020.12.17.)” 건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헌법 권징 제8조 제4항에 근거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
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근거 당사자인 기
소위원장과 피고(또는 행정소송일 경우 원고, 피고)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시행규

정 제38조에 근거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만약 양당사자 합해서 재적 3분의 1을 기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한쪽이 재적 3분의 1을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신청할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호에 근거 치리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원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위헌은 하위법(헌법시행규정)이 상위법(헌법)에 위배 될 때 다투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기피신청 된 국원은 자신의 기피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나 타 국원 기피결정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9항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총회 재판국에서 10명이 참석하여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5명)을 초과한 7명이 기피신청된 상황에서 보정명령도 없이 곧바로 기피결정한 것이 위헌인지요? 합헌인지요? 동 제38조 9항에 기피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고 했는데 기피신청된 국원이 타 국원 기피결정 투표에 참여한 것은 불법은 아닌지요?

19) 익산노회장 정경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7-1호 / 헌법질의 건(2020.11.9.)”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노회에서 이미 재판이 끝나고 분쟁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우선 ‘위탁재판건’은 이미 황등교회 당회재판국이 시작되어 당회기소위원회에서 피고발인에게 제1차 출석통지서(붙임자료1. 2020.6.17. 사건번호: 2020-2, 사건명: 장로의무 불이행 외3건)발부한 바가 있는 사건인데 당회 재판 중간에 당회 결의(2020.7.12.)로 익산노회로 위탁되어져서 위탁재판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2) 황등교회 당회는 익산노회에 위탁 청원한 ‘위탁 재판건’의 청원이유가 당회재판국에서 다루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노회재판국에 위탁하기로 결의합니다. 황등교회가 위탁 재판을 청원이유는 ‘교회재판국에서 다루기가 난처하니’인데 이것은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1절 위탁재판 제120조 위탁재판의 청원 3가지 사유(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2조 4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 보더라도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익산노회가 위탁재판 허용해도 되는지요?

질의3) 황등교회 재판국에서 다루기로 한 ‘당회재판건’은 헌법시행규정 제72조 4(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 따르면 재판국장 정동은 목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02회 헌법위는 ‘총회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그 사건에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재판건’은 재판국장인 정동은 목사가 피고소고발인에 해당하므로 당회 재판국이 구성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마땅히 위탁재판이 청원되어서 익산노회 위탁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황등교회 당회가 당회재판국을 설치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황등교회 기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해도 되는지요?

질의4)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피고소고발인인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기에 당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판국장인 정동은 목사가 피고소인이 된 경우에는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도록 명시(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되어 있고, 재판국장이 피고소인인 경우 재판국원에서 제척(헌법권징 제8조) 되기 때문에 당회재판국이 구성될 수도 없고 총회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피고소고발인인 정동은 목사)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기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당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신문에 응해야 하는지요? 이때 당회 기소위원회가 기소기각 결정도 무효가 되는지요?

질의5) 그리고 ‘당회재판건’의 경우에는 정동은 목사가 피고소인이 된 경우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도록 명시(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등교회 당회가 ‘당회 재판건’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면 신청인이 익산노회에 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 서울동남노회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사면(해벌) 결의 집행에 관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 (2020.11.2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오래전(13년 전) 권고 사항에 대한 자료 불비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총회 제91-736호 “특별사면(해벌)시행 권고”(2007.7.6.) 및 총회 제101-146호 (2016.10.31.) 관련하여 모 교회 담임목사는 총회의 출교(면직)에 대한 특별사면(해벌)시행권고(2007.7.6.)를 통지받고서도, 총회장의 행정지시를 불이행하여, 2016.10.31.자. 총회장은 거듭 영등포노회에 모교회가 집행하도록 권고를 결의하고, 노회가 지도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모 교회 담임목사는 고의적으로 당회 결의에서 해벌을 부결시키는 등으로 수년 동안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1) 위 경우에 헌법 정치(교인의 복권) 제20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4조 2항에 따른 당회 결의 없이 교인의 회원권(집사직)으로 복권이 가능합니까?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 지시를 위반하고 불이행한 자(당회장)는 처벌사항으로 가능합니까?

- 21) 경동노회 뱌엘산성교회 김태화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20.12.14.)”, “누락 서류 제출(경동노회가 반송한 헌법질의서 반려 공문)(2021.1.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교회 분쟁으로 교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의 해석이 유효하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해석을 감안할 때, 분쟁중임에도 노회에서 아무런 행정조치(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 기타)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무기한으로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뱌엘산성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청빙에 관련하여 노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반려된 점, 노회가 사고 교회로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지 않은 점, 노회가 연임청원을 보류하여 회기가 지나도록 청빙을 승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 및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그의 신분은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제100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9번 참조) 따라서 무임목사 신분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2)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뱌엘산성교회는 담임목사가 부존한 상태 즉 경동노회가 2020년 4월 노회 시에 연임 청빙을 하지 않아 무임처리 된 상태에서 당회장이 아닌 자가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그 제직회가 적법한 것입니까?

질의2) 당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회원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제직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극소수(6명)만 임명하여 제직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 22) 김제노회 금옥교회 서광종 목사가 제출한 “금옥교회 제2020-05호 / 헌법해석의 건(2020.12.28.)”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은 헌법에 전도목사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빙할 수 없다.

질의2) 전도목사 청빙에 있어서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에는 교회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헌법 정치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도처에는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에 대해서는 노회가 판단할 사항이다.(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5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가 전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2 전도목사 청빙에 있어서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에 교회도 포함되는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서울강남노회장 이성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7-138호 / 헌법 질의의 건(2021.1.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제104회기 헌법해석(29번)에 따라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부목사 청빙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신규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에 근거하고 제103회기 헌법해석(49번)에 따라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질의3) 사회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해석 할 수 없으나 교회법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제103회기 헌법해석 49번, 제104회기 헌법해석 29번 참조)

(제103회기 헌법해석 49번)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2.11.)” -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 건,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 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해석 : 교육목사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 교단의 무임목사가 1,800명이나 되며 임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에 근거 자동해직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담임목사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를 청원하여 무임목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목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에 대하여 문제점(노회원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당회원권, 안수청원, 전임사역이 가능한지)과 혼란이 있을 것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위원회에서는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완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연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2019.2.11.)”- “사무국-366

/ 헌법해석 보고(2019.1.30.)” - 중 13)번(영등포노회장 질의, 부산동노회장 질의, 경기노회장 질의) 해석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존 해석(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33번 해석/제103회 총회 회의안 662쪽, 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49번 해석/제101회 총회 회의록 623쪽 등)과 상충되므로 이를 감안해 주시고, 이번 제103회 총회 시 헌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질의
1) 교육목사의 노회원 자격은 어디까지인지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질의2) 당회원권과 안수청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나.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질의1) 새로 신설된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 교육목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목사로 청빙을 하였지만 교육목사라는 목사 칭호가 신설되어 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청빙코자 할 때 현재 시무 중에 있는 부목사를 교육목사로 청빙 시 신규로 교육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목사 연임청원서 제출로 교육목사로 청빙이 가능한지?

다.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질의
1)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7항(신설)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중 “교육목사는 위임(담임) 목사를”에서 위임 목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조직, 미조직교회)에서도 교육목사 청빙이 가능한지요? 질의2)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 청원과 연임 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에 준용한다.”, “헌법 제28조 4항에 부목사 계속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에서 담임목사가 교육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로 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에 의하여 교육목사가 노회원 자격이 있는지요?

라.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질의1) 위임목사 아닌 경우에도 교육목사 청빙의 가능 여부 질의2) 교육목사가 전임사역자(파트타임, 준전임)가 아닌 경우에도 청빙 가능 여부 질의3) 교육목사의 당회원 자격 가능 여부(담임목사 청빙에도 당회원 자격의 결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노회원의 자격 가능 여부.

(제104회기 헌법해석 29번)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 제126-22호 / 헌법시행규정 제18조 2항과 관련된 부목사 연임 청원에 관한 해석 요청(2020.3.17.)”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여기서 신규의 의미는 임시당회장 노회 파송일 또는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질의2) 2012.9.20.일 개정 삭제되기 전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의 사유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들에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

18조는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 18조 제1항에 신규 청원은 어느 시점부터이며, 부목사가 1년 시무하고 다시 1년을 연 임 청원하는 그 시점을 신규라고 하는지? 또는 부목사 청원으로 신규 부임했을 시점을 신규라 하는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2)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담임목사가 몇 회까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1회가 아닌 몇 회라도 담임목사가 위임목사 시무 전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면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과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떤 법이 우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목사가 아닌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목사 또는 교육 목사를 청빙하거나 안수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다면 총회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목사 또는 교육목사를 청빙하거나 안수를 줄 수 없다면 이 같은 문제를 노회의 헌의 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정치부에서 허락하여 노회 본회의에서 안수를 주기로 결의하여 안수를 주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지, 만약 불법인 경우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최근 사회법정에서 판결된 판례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개 교회 규정 또는 부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1-8호 / 전도사 겸직의 건(2021.1.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휴무장로는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4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 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에 근거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을 준용한다.

질의내용 : 질의) 헌법 정치 제49조 제3항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무장로가 전도사로 시무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259호 / 헌법 정치 제92조에 따른 단체에 대한 질의의 건(2021.1.7.)”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헌법 정치 제92조에 근거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치리회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사적인 임의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까지 제한 할 수는 없다. 다만, 임의단체를 통해서 노

회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권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책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노회가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부위원장 이용혁, 총무 이재룡, 서기 최규희)라는 임의단체를 조직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임원들을 비방하고, 총회를 공격하는 등, 특히 서울 명성교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정상적인 목사 청빙임을 가지고 거짓으로 불법 세습으로 프레임)을 배포하는 등으로, 노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심각한 노회 분쟁과 서울 명성교회를 파괴하는 등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경우에 헌법 정치 제92조에 따른 치리회의 승인 없이 조직된 단체이므로 불법 단체로 확인되는데, 불법단체입니까? 합법단체입니까?

26) 대구동남노회장 윤대호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 제187-45호 / 행정소송절차와 원고자격 및 기각에 대한 질의(2021.1.6.)”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행정소송은 헌법 권징 제141조 헌법시행규정 제74조에 근거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1항에 근거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권징과 같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에 이첩해야 한다.

질의2) 원고 적격여부는 해당 치리회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3) 행정소송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기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교회 시무장로께서 치리장(당회장)의 행정행위 “부자격자의 권사 피택취소에 대한 거부와 피택자격 강행”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노회에 접수하므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143조 “재판관할” 1항에 의거하여 본 노회 임원회를 경유하여 재판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에 대하여 기소위원장 및 노회원 중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 1) 행정소송건을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이첩한 절차과정
- 2) 상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회원은 원고로서 부적격(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144조 “원고적격” 1항)
- 3) 행정소송은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기각여부를 결정

27)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장경덕 목사가 제출한 “장신법 2021-002호 / 총장 임기 70세에 관한 질의(2021.1.15.)”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퇴직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생년월일로 임기 만료일을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학기

말 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에 정년은 만70세로 되어 있고, 총회 인준을 받아 임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회헌법 정치 제22조를 준용하여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임기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 : 일반직 공무원(1월~6월 생일 6월말 퇴직, 7월~12월 생일 12월말 퇴직)과 교육공무원(3월~8월 생일 8월말 퇴직, 9월~2월 생일 2월말 퇴직)]

질의내용 : 질의)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임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만70세의 총장의 임기 만료일을 해당 생년월일로 할 것인지, 학기 말로 할 것인지, 연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8) 광주노회장 박수일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5-36호 / 헌법 해석 질의(2021.1.2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경우 교회의 중요 결의사항 등은 당회를 대신하여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행정상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제54조의 3에 근거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1) A교회는 당회가 없어 제직회 결의로 제직회장인 C목사가 통장명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4조의 3에 의하여 업무상의 행위가 책벌대상이 되는가?

29)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148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82-06호 / 동신교회 주체 및 임시당회장 파송 질의 건(2021.1.13.)”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재판국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뿐 아니라 각 노회 및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권징과 처벌에 대한 국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일시적인 집행정지(가처분)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하는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가법 권위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결한 집행정지(가처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총회, 노회, 교회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동일하게 해석하기로 한다.

질의1) 교회법과 국가법에 상이한 점이 있어 국가법 판결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노회 목사가 맞다.

질의2)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에서는 목사직은 유지된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목사 측과 반대 측 어느 특정을 주체로 정할 수 없다.

질의3,4)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산동신교회는 당회장의 결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제101회기 헌법해석 96번, 104번, 116번, 제102회기 헌법해석 18번, 제103회기 헌법해석 26번, 80번 참조)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6번)

군산노회 하영교회 민병채 목사가 제출한 “하영18-2호 / 헌법질의(2018.11.21.)”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69조 제2항에 근거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소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은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 당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26조에 근거 목사에 대한 사항을 재판할 수 없다. 재판이 아닌 권고사임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회에서 사임권고 결의 효력 여부는 당회 결의로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고 판단되나, 권고사임에 대한 효력은 상기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질의2-가~라)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2016년 12월 11일 제직회에서 회원이 노회와 교단탈퇴 하자는 돌출 발언을 제직회장이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찬반을 물어 찬성33표 반대13 표로 노회와 교단탈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면 이 행위는 직권남용의 유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2) 제직회의 결의와 선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직회직후 1주일여간에 당회에서수습하기 위하여 당회원 모두가 3회에 걸쳐 당회소집을 요청했지만 당회장이 묵살하고 2018년 11월 1일 현재까지도 당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위임목사를 당회에서 사임 시킬 수 없지만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11개항 중 1개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전부터 무려 4개항 이상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내용증명을 2~3회에 걸쳐 보내고 본인(목사)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임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1) 사임권고안을 본인(목사)의 문제를 본인이 당회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대리당회장을 초빙해서 1심재판국인 당회에서 처리하기로 본인(목사)을 비롯하여 당회원 전원이 홍00 목사님을 대리목사로 초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본인이 위임한 사임의 건을 당회에서 대리당회장 사회로 당회원 모두가 사임시키기로 결의했다면 당회장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의 여부와 사임결의의 효력의 여부를 해석바람. 질의2) 김대현 목사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교회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엄연히 군산동신교회 제직회가 존재하는데도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만으로 제직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10월경부터는 당회 결의를 통한 자신의 사퇴결의를 한 것에 대한 군산노회 위탁재판의 결과가 시무장로들의 무죄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산돌학교라는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산돌학교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는 군산동신교회와는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동신교회의 원로, 은퇴 시무장로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동신교회이름의 주보를 사용하면서 당회의 어떠한 결의도 없이 헌금을 걷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와 같이 교회의 유일한 치리회인 당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직회를 구성하고, 헌금을 걷는 행위, 헌금을 사례비로 집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나. 김대현 목사가 장로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주보사용은 적법한 것인지? 다. 이러한 경우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라.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면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 명의로 걷은 헌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횡령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0번)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80-60 / 헌법해석 질의(2019.6.13.)” 건

해석 : 질의1) 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 제6조에 근거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교회 분립을 결정할 수 없다. 질의2,3) 임시당회장 파송은 헌법 정치 제67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노회가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이 결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회를 분립함이 불법인지요? 질의2) 본당에서 예배드리 는 교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불법인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공문을 접수한 노회장은 인사권은 정치부 처리사항이기에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치부로 이첩함이 불법인지요(수습전권위원회 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킨바 없고,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에서 파송 요청).

질의내용 : <“행정재무처-148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행정·재무처-776 / 헌 법해석 보고(2021.1.22.)”와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헌법해석 보고의 9)번 군산노회장 질의 해석은 총회재판국 판결보다 국가법원의 최종심 판결도 아닌 ‘총회재판국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우위로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재심의의를 요청하니 이를 확인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82-06호 / 동신교회 주체 및 임시당회장 파송 질 의 건(2021.1.13.)”>

질의1) 김대현 목사는 총회의 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았으나, 사회 법정으로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을 받았는데, 김대현 목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 목사가 맞는지?

질의2) 노회는 목사 측과 반대 측 중 동신교회 주체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김대현 목사 측은 노회 상회비를 분쟁 이후에도 납부하여 왔음.)

질의3) 만일 임시당회장을 동신교회에 파송해야 한다면,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은 교회 주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 교회 주체가 아닌 측(목사 반대 측) 에서 요청하는 경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지?

질의4) 만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면, 임시당회장은 양측을 모두 관할하는지 아니면 파송 요청한 측만 관할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전남노회장 김승익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32-032호 / 담임목사 연임청원 건을 다루는 제직회의 적법 여부(2021.2.9.)”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5에 근거 청원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경우에는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당회를 대신하여 제직회에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사 결정에 치우침이 없 도록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을 준용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나주 봉향중앙교회는 미조직교회로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원 9명 중 3 명이 참석하였고 2명이 부부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의하면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신설개정 2018.9.13.)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 인사 건을 다루는 제 직회에도 적용되는지를 질의합니다.

31) 순서노회장 김성신 장로가 제출한 “순서노 제44-35호 / 헌법해석 질의(2021.2.23.)”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시무장로는 목사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시무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고시를 보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헌법 정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사로 임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시무장로의 목사고시 응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현 시무장로가 목사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목사고시를 보는 목적이 목사 일을 하기 위해서 라고 봅니다. 시무장로는 목사를 겸할 수 없고 헌법 제7장 49조에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했습니다. 먼저 장로직을 사임하고 목사고시를 봐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가. 조직

- 1) 임원 : 위원장 심상호 목사 서기 박홍길 목사 회계 최규재 장로
- 2) 전문위원 : 박형국 교수(한일장신대), 최종호 목사(익산), 이수부 목사(부천)
- 3) 상담소장 : 최태영 교수(교회신학교연구소소장)
- 4) 전문상담사
신외식 목사(여수), 강경호 목사(서울서북), 김성준 목사(순서), 임웅기 목사(광주동)

5) 분과위원회

가)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 남기룡 목사 서기 : 김성렬 목사 위원 : 장경덕 목사 김기수 장로

나)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유무한 목사 서기 : 문영길 목사 위원 : 서성환 목사 백용훈 목사

다) 상담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승열 목사 서기 : 이민규 목사 위원 : 조호영 목사 성우기 장로

나. 제105회 총회 수입안전 및 이첩안전 연구중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에 위임된 수입안전 연구 및 조사중

다. 제105회 지역별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 및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 총회 이단상담사 교육는 코로나 관계로 개최 미정

라. 8월 첫째주(8/1) 이단경계주일 성수 준비 및 자료집 발간 예정

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김대석 목사가 제출한 “전광훈 목사 면직 또는 제명에 대한 대신교단의 입장건”은 받기로 함

바. 대전서노회장 정용주 목사가 제출한 “서사라 목사의 이단성 문제 여부 질의 건”은 조사분과위원회로 보내기로 함

사. 서울서남노회 김종서 장로가 제출한 “정의준 부목사(고촌중앙교회) 설교에 대한 이단성 여부 판결 요청-수신: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2020.10.13.)” 외 7건은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확인함.

6. 선거관리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김순미 장로 서기 박남석 목사 회계 송인화 장로
- 나. 소위원회 조직 및 미진안건에 대하여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다. 부총회장 후보신청서 및 부총회장 예비후보등록 신청서 송부 및 접수공지
- 라.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계획(안)' 결정
- 마.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 신청서심의소위원회 : 송재구 목사(위) 권영만 목사 이대원 장로
 - 유인물발송소위원회 : 이석형 목사(위) 황점선 목사 임성학 장로
 - 고소·고발소위원회 : 서성환 목사(위) 장태식 목사 전학수 장로
 - 투표관리소위원회 : 곽재욱 목사(위) 박남석 목사 임산규 장로
 - 개표관리소위원회 : 이성기 장로(위) 김순미 장로 송인화 장로
- 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투표지 폐기 건은 총회 임원선거조례 투표지관리세칙 제8조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총회 폐회 후 20일까지 보관후 폐기한다」에 의거 폐기하기로 함

7. 이슬람및단군상대책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임준태 목사 서기 조인서 목사 회계 김관기 장로
- 나. 수임안건의 '1) 제89회 총회 때 제89회 총회 때 10월 3일을 포함한 첫 주일을 단군상문제대책 기도주일로 정했으므로 전국 노회와 교회가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2)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 결의 후속조치', '3)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교단산하 68개 노회에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달라는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한 회기동안 연구하여 청원하기로 하다.
- 다. “재무회계국-7855 / 제105-2차 재정부실행위원회 회의결과 알림(2020.11.19.)”에 대하여 조직 구성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배정 보류된 예산을 제105회 총회에 청원한 그대로 배정하도록 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다.
- 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다.

8. 화해조정전권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채영남 목사 서기 박도현 목사 회계 윤재인 장로
- 나.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담당화해조정위원으로 박도현 목사, 양명안 목사, 윤재인 장로, 정상호 장로를 배정하여 상호 협조하여 화해조정을 진행하기로 하다.
- 다. 안강제일교회 양측에 화해조정위원회 구성과 향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 라. 안강제일교회 화해조정 합의서 체결함(2021. 3.10)

9.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박진석 목사 서기 방승필 목사 회계 서재철 장로
- 나. 다음의 105회 의제 기획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1) 조기 기금고갈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 2) 교회, 노회, 총회의 저성장 다운시대에 효율적 기금 운영 방안
 -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연금운용에 대한 전략 - 가입자 목회자들의 노후 복지, 의료, 주택 등 서비스 지원
 - 4) 바람잘날 없는 비리의혹과 책임지지 않는 손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
- 다. 재단이사회와 가입자회에 업무 지원으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요청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10. 헌법개정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김성철 목사 서기 김성기 목사 회계 조한원 장로
- 나. 전문위원 안정순 목사(순천남) 은퇴에 따른 후임으로 노영상 목사(제102회기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장, 제104회기 헌법개정위원회 교리분과 전문위원)를 보선하고 총회 임원회 청원하기로 하다.
- 다. 제105회 총회 수입된 헌법 개정(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기로 하다.
- 교리 분과(4명):김성철(위), 김성기 조한원 (노영상)
 - 정치 분과(7명):김준기(위), 이상봉 양인석 정용철 김기태 유영창 (황형찬)
 - 권징 분과(7명):김연현(위), 김길상 최수남 조좌상 조현문 김행복 (이호익)
- 라. 제105회 총회 수입 안전 연구에 따른 분과별(정치, 권징, 교리)회의 후 개정(안) 심의는 계속 검토, 연구하기로 하다.

11.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채영남 목사, 서기 김성철 목사
- 나. 경과확인의 건은 제105회기 총회보고서와 추가보고서를 유인물과 확인하고 참고하기로 하다.
- 다. “사무국-4186 / 서류이첩(2020.11.13.)” 및 “사무국-4448 / 서류이첩(2020.12.3.)” 건은 참고하기로 하다.

12.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손달익 목사, 서기 최종호 목사, 회계 김기수 장로를 선출하다.
- 나. 이첩된 안전 중 대구 애락원과 관련된 1) “애락법인—40호 /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기본재산(현금) 목록 변경 승인 요청(2020.8.31.)” 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가 공증된 ‘(재단법인)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2019. 11. 18)’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본재산 변경 절차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절차대로 처리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헌법시행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대구애락원이 총회산하기관임을 대구애락원 정관에 조속히 명시하도록 대구애락원 이사회에 촉구해 주실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 하기로 하다.
- 다.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참고하여 총회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본 위원회 조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여전도회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문서를 참고서류로 제출하기로 함.
- 라.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장 직무대행 김태영 목사가 사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총회임원회가 법원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총회임원회에 제출하

기로 함.

- 마. 대구애락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사건(접수번호 제147965호)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다’는 문구가 등재되었다 삭제된 건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대구애락원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총회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바.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일괄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전주예수병원 는 현황을 고려하여 파송이사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도록 의견을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13.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박한규 장로, 서기 박중근 목사, 회계 유홍열 장로
- 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서울노회유지재단 강제 경매 사건(대법원2019다302985 청구이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 (주)선우와 협상 중에 있는 바, 강제 경매 압류 대상인 서울노회 소속 10개 교회 외에 서울서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추가로 강제경매에 포함되어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문제를 노회 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서노회 대표 자격을 지닌 인사 1인을 추가 선임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다. 본 위원회 협상지원분과는 제104회기 분과위원들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분과위원 : 오세정 장로, 유홍열 장로, 박대준 목사, 안옥섭 장로, 박검섭 장로
- 라. 서울노회, 서울서노회 소속교회에 대한 강제경매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산하 10개 교단에 진정 탄원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마. 서울노회유지재단의 강제경매 사건(12개 교회 강제 경매 진행 중)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산하 협상지원분과의 활동내용과 긴급한 현황을 보고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문제수습 및 (주)선우와의 협상 활동을 위한 제반비용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확인하여, 제104회기에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500만원 1회 지원으로 종료되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에 서울노회유지재단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문제수습 및 협상활동 예산’으로 삼천만(30,000,000) 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14.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

- 가. 조직 : 위원장 양원용 목사 서기 정일세 목사 회계 최종섭 장로
- 나.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특별감사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 다. 제104회기 총회연금재단 대책으로 계속된 “사무국-1085 / 기소의뢰 청원(2020.4.24.)”- 부산민락동 부지 공매와 재매각에 관한 총회연금재단 전이사장 심태식 목사, 이남순 목사 고발-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과 함해노회에 신속하게 재판해 줄 것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 라. 분과위원 선정
 - 가) 제104회기 연금재단 대책 고소고발 분과 : 정일세 목사, 최종섭 장로
 - 나) 신한글로벌 헬스케어 220억 투자 특별감사 분과 : 김덕수 목사, 김준영 목사
 - 다) 총회연금재단 정관개정 분과 : 최충원 목사, 박웅섭 목사, 박만희 목사
- 마.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총회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15.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

가. 조직 : 위원장 류영모 목사, 서기 이성주 목사

나. 서울서남노회 분립예식 진행 및 분립 완료

2021.2.23.(화) 고척교회에서 서울서남노회 분립예식후 노회 분립 완료함

16. 기타 주요 업무 처리

가. 제105회 총회 찰요 총회홈페이지 자료실 업로드

나. 제105회 총회 결의 각 부, 위원회, 재단, 기관, 노회에 수임안건 분류 및 통지

다. 2021년 총회 수첩 앱 업로드

라. 제105회 총회 회의록 편집 및 발행(2021년 3월 발행 예정)

마. 총회 사료관 운영 관리 : 2020년 전시장 개편, 매월 평균 100여 명 관람

바. 사회 소송사건 제반 실무

영등포노회 영등포제일교회, 군산노회 동신교회, 안양노회 명학교회,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등 관련
소송 실무 지원

II. 재무회계 부문

1. 재정부

가. 조직

1) 임원 : 부장 김대권 장로 서기 이형욱 장로 회계 이수원 장로

2) 실행위원 : 12인

3) 산하위원회

가) 재정정책연구위원회(7명)

나) 예산결산위원회(8명)

다) 세정대책위원회(9명)

나. 회 의

1) 부 회의 : 1회

2) 실행위원회 : 3회

3) 임원회 : 3회

4) 재정정책연구위원회 : 1회

5) 예산결산위원회 : 1회

6) 세정대책위원회 : 1회

다.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내용

가. 제1차 재정부 부회의(2020. 9. 2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제105회기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

(임 원)

부 장 : 김대권 장로(서울서)

서 기 : 이형욱 장로(평 양)

회 계 : 이수원 장로(서울동북)

(실행위원)

강남지역 : 이광홍 장로(경 기) 김현갑 장로(서울강동) 조한원 장로(서울서남)

강북지역 : 김대권 장로(서울서) 이수원 장로(서울동북) 신태구 장로(서울강북)

서부지역 : 유기식 장로(광 주) 송종창 장로(전 북) 최광식 장로(여 수)

동부지역 : 박영배 장로(울 산) 차현태 장로(부 산) 안병주 장로(영 주)

중부지역 : 이형욱 장로(평 양) 김석순 장로(강원동) 윤왕열 장로(대전서)

2) 제105회 총회에 제출할 청원 건과 헌의안 건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나. 제1차 실행위원회(2020. 9. 2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제105회 총회에 제출할 청원 건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가) 제105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105회기 예산안을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105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 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원회의에서 위임된 헌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제105회 총회 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가)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30% 감면해 달라는 건과 인천노회장 문철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 부과액의 20%를 감면해 달라는 건과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코로나-19로 인해 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회비를 감면해 달라는 건은 제105회기 예산안은 전회기 예산 대비 10억 5천 996만원(10%)이 감소한 95억 4천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회비 5% 인하분 2억 1천 857만원과 총회헌금 감소분 2억 원과 각부서 사업비 축소에 따른 감소분이며, 또한 상회비는 3년 연속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3년간 3억 5천 400만원(7.85%)이 감소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차기에는 더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차적인 재정 감축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나)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3%를 총회연금재단으로 출

연하는 것을 지켜달라는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현의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채택된 것과 같이 연금재단에 노회상회비 3% 출연 건은 연금재단 자체 규정이 결의된 것으로 총회 상회비와 관련하여 총회재정부의 허락 없이는 총회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총회상회비가 매년 2%씩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는 노회상회비를 3% 인상하지 않는 한 출연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보고는 받다.”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다) 포항남노회장 이하준 목사가 제출한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건은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 건은 그동안 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의 모금을 없앤 총회에서 전국적인 모금허락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합니다.

다. 제1차 임원회(2020. 10. 6., 카페온회의실)

결의사항 : 1) 재정부 산하위원회 위원 선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가) 재정정책연구위원회(7명)

위원장 : 박영배

서 기 : 송종창

위 원 : 김대권, 김현갑, 안병주, 신태구, 류만수

나) 예산결산위원회(8명)

위원장 : 김대권

서 기 : 이형욱

위 원 : 조한원, 차현태, 이광홍, 윤왕열, 유기식, 장오표(총회회계)

전문위원 : 이훈범(전 전문위원), 이식영(총회퇴직 후)

다) 세정대책위원회(9명)

위원장 : 정찬홍

서 기 : 박홍조

위 원 : 이수원, 최광식, 김석순, 최효녀(총회부회계), 전진관(세무사),

서창열(세무사), 서재철(전 재정부 서기)

전문위원 : 김진호(세무사), 김종철(공인회계사), 유봉환(공인회계사)

2) 제105회기 총회 현의안 보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가)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30% 감면해 달라는 건과 인천노회장 문철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 부과액의 20%를 감면해 달라는 건과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회비를 감면해 달라는 건은 제105회기 예산안은 전회기 예산 대비 10억 5천 996만원(10%)이 감소한 95억 4천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회비는 3년연속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3년간 3억 5천 400만원(7.85%)이 감소되었고,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차기에는 더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차적인 재정 감축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나)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3%를 총회연금재단으로 출

연하는 것을 지켜달라는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동일한 현의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채택된 것과 같이 총회연금재단에 노회상회비 3% 출연 건은 연금재단 자체 규정이 결의된 것으로 총회 상회비와 관련하여 총회재정부의 허락 없이는 총회예산에 반영 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총회상회비가 매년 2%씩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는 노회상회비를 3% 인상하지 않는 한 출연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보고는 받다.”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다) 포항남노회장 이하준 목사가 제출한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건은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 건은 그동안 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의 모금을 없앤 총회에서 전국적인 모금 허락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합니다.

3) 제105회기 재정부 주요 일정 계획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고 받다.

가) 실행위원회 : 약 2개월 마다 회의 소집

나) 재정정책협의회 : 12월 중 산하위원회 전체 모임

다) 재정정책세미나 : 2021년 5월말 쯤 총회재정부원, 전국노회 재정부장, 노회 회계, 부회계 대상

라) 산하위원회 : 각 위원회 별로 정책 사업을 연구하여 재정부 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마) 종교인 소득세 납부 교육 : 2021년 중

라. 제2차 임원회(2020. 10. 6., 경기 광주)

결의사항 : 1) 제105회기 재정부 정책협의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다.

가)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나) 장소 : 유성 인터시티호텔 오전 11시

다) 특강 : 변창배목사(총회사무총장)

라) 참석대상 : 재정부실행위원, 재정정책연구위원, 세정대책위원, 예산결산위원(예상인원 : 실행위원 15명 전문위원 12명 실무자 5명 / 33명)

2) 제105회기 시행되는 규정 및 회의안건은 정책협의회시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다.

마. 제2차 실행위원회(2020. 11. 4.,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재정부 임원회가 제출한 산하위원회 위원 선임을 추인하기로 하다.

2) 제105회 총회 수임 안건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로 하다.

가) 제105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나) 제105회기 예산안을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다) 제105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라)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30% 감면해 달라는 건과 인천노회장 문철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 부과액의 20%를 감면해 달라는 건과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회비를 감면해 달라는 건은 향후 재정 감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연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첩하여 연구하기로 하다.

3) 총회임원회 이첩안건 처리

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청원한 <드라마 손양원> 전국공연비 특별보조금 5,000,000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기타특별위원회 항목)

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제출한 총회는 장애인헌장을 선포하고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주일을 통해 장애인복지선교에 교회들의 적극 참여와 해당 주일 헌금이 장애인 선교와 구호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과 장애인주일을 통해 총회의 자랑스러운 기관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대한 총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하는 건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200명의 종사자와 400여명의 보조인이 매년 4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회 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에 총회와 교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청원 건은 협력하기로 하다.

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에 교회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한 이슬람 대책 영상 제작 예산 15,000,000원과 단군상문제대책 사업을 위한 예산 7,500,000원 배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특별위원회 조직이 구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다.

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업비 5,000,000원 지원요청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연합사업위원회 항목)

마) 국내선교부장 장승천 목사가 제출한 병동설립을 위한 모금은 노회나 교회의 재정 모금이 아닌 기부금이나 기증을 통해 추진 할 예정이오니 허락해 달라는 내용은 모금이 아닌 기증이나 기부 건은 재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바) 법무법인 유한(광장)이 제출한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상대로 한 산하기관지위 확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11,000,000원 청구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자문료/변호사 선임료 항목)

4) 각 부·위원회 재정청원 건 처리 결과

가) 해외·다문화선교처 세목 및 산출기초 전용 요구 건 허락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9/20)	전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사유
(세출부) 선교활성화	선교현장 지원	34,450,000	1,655,200	0	34,450,000	* 총회 언권회원선교사 예산 300만원 중 예산 100만원을 선교사 근속시상으로 전용 (같은 항,목에서 전용) 1. 선교사근속시상 1,200만원 전용금액 100만원 증가 합계: 1,300만원 2. 총회언권회원선교사 300만원 전용금액 100만원 감소

						합계: 200만원
합계		34,450,000	1,655,200		34,450,000	

나) 도농·사회처(재해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청원 건 허락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10.19)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세 입 부) 재해구호헌금	국내재해 구호헌금	600,000,000	678,162,076	150,000,000	750,000,000
세 입 계		600,000,000	678,162,076	150,000,000	750,000,000
추가경정 예 산 액		1,200,000,000		150,000,000	1,350,000,000
(세 출 부) 재해구호비	국내재해 구호비	650,000,000	453,838,300	150,000,000	800,000,000
세 출 계		650,000,000	453,838,300	150,000,000	800,000,000
추가경정 예 산 액		1,200,000,000		150,000,000	1,350,000,000

다) 행정·재무처 예산전용 요구 건 허락

항	목	기존예산액	전용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 출 부) 상임부·위원회	규칙부	20,300,000	14,000,000	34,300,000
예비비	예비비	357,402,912	-14,000,000	343,402,912
합 계		377,702,912	0	377,702,912

5) 기타 안건 처리 결과

가) 안양노회 노회장직무 대행 한성도목사가 제출한 총회헌금 부족액 5,451,000원을 노회 상회비에 부과한 내용에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지교회와 노회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회가 총회 상회비를 완납했음에 불구하고 총회헌금 부족액을 노회 상회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 삭감해 주시길 청원하오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은 불허하기로 하다.

나) 총회감사위원회에서 제104회기 재정부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 건에 관한 제105회기부터 시행되는 부서 통합에 대한 재정 재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자체 운영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세정대책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내규를 연구토록 하다.

다) 총회직원관련 명예퇴직 건은 추후 규칙부에서 해석이 나오면 재정부 임원회에 의논하기로 위임하기로 하다.

6) 제105회기 특별위원회 예산 배정 건은 11월 12일 총회 임원회 보고 후 차기에 결정하기로 하다.

바. 제3차 임원회(2020. 12. 3., 카페온회의실)

- 결의사항 : 1) 2020년 12월 9일 실시하기로 한 제105회기 재정부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인하여 일정을 2021년 2월 중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2) 제105-2차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재무회계국장 이식영장로 퇴직 예우(안)”을 허락하고 귀 재정부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하니 협조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퇴직금 항목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 3) 제105회기 특별위원회 배정(안)은 위원회별로 회의비예산으로 300만원씩 배정하기로 하다.
- 4) 제105-3차 재정부실행위원회를 2020. 12. 29.(화) 오후2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기로 하다.

사. 제3차 실행위원회(2020. 12.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재정부 임원회 추인 안건 허락

- 가) 2020년 12월 9일 실시하기로 한 제105회기 재정부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인하여 일정을 2021년 2월 중으로 변경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나) 제105-2차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재무회계국장 이식영장로 퇴직 예우(안)”을 허락하고 귀 재정부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하니 협조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퇴직금 항목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 다) 제105회기 특별위원회 배정(안)은 위원회별로 회의비예산으로 300만원씩 배정하기로 허락하다.

2) 총회임원회 이첩안건 처리

- 가) 포항남노회장 장성표 목사가 제출한 “총회 울릉도,독도 선교100주년기념관 건립 상황 보고 및 청원 건은 재정부임원회 제105-1차에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 건은 그동안 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의 모금을 없앤 총회에서 전국적인 모금 허락은 불허하기로 하다.
- 나) 총회 전산홍보팀故이상원과장 명예퇴직 의견제출 건은 규칙부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 하도록 허락하다.

3) 각 부,위원회 추가경정(전용) 청원 건 처리 결과

가) 해외·다문화선교처

① 세목 및 산출기초 전용 요구 허락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2/4)	전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사유
(지출부) 선교 활성화	선교현장 지원	34,450,000	17,560,000	0	34,450,000	* 총회 연권회원선교사 예산 200만원 중 예산 90만원을 선교사경조비로 전용, 예산 30만원을 선교사근속시상비로 전용 (같은 항,목에서 전용) 1. 총회연권회원선교사 200만원 전용금액 : 120만원 감소 예산잔액 : 80만원 2. 선교사경조비 700만원

						전용금액 90만원 증가 예산잔액 : 790만원 3. 선교사근속시상비 1,300만원 전용금액 30만원 증가 예산잔액 : 1,330만원
합계		34,450,000	17,560,000	0	34,450,000	

② 추가경정예산 요구 허락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11.24)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수입부) 후원금	해외다문화 선교원금	184,170,000	9,800,000	11,500,000	195,670,000
수입계		184,170,000	9,800,000	11,500,000	195,67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47,400,000		11,500,000	9,558,900,000
(지출부) 선교사교육	선교사교육	171,020,000	49,212,030	11,500,000	182,520,000
지출계		171,020,000	49,212,030	11,500,000	182,52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47,400,000		11,500,000	9,558,900,000

나) 교육훈련처

① 추가경정예산 요구 허락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11.9)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수입부) 후원금	교육훈련처 후원금	58,500,000	21,500,000	4,000,000	62,500,000
수입계		58,500,000	21,500,000	4,000,000	62,50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58,900,000		4,000,000	9,562,900,000
(지출부) 부서회의비	교육훈련처 회의비	21,000,000	10,271,640	4,000,000	25,000,000
지출계		21,000,000	10,271,640	4,000,000	25,00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58,900,000		4,000,000	9,562,900,000

다) 국내와 군·특수훈련처

① 추가경정예산 요구 허락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12.16)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수입부) 후원금	국내와군·특수 선교후원금	223,900,000	151,000,000	54,200,000	278,100,000
수입계		223,900,000	151,000,000	54,200,000	278,10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62,900,000		54,200,000	9,617,100,000
(지출부) 군선교	군선교현장	92,000,000	63,567,620	46,200,000	138,200,000
	군종목사	35,500,000	13,872,000	4,000,000	39,500,000
	군선교네트 워크	43,000,000	8,814,000	4,000,000	47,000,000
지출계		170,500,000	86,253,620	54,200,000	224,700,000
추가경정 예산액		9,562,900,000			9,617,100,000

라) 교회성폭력대위원회가 제출한 교회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과 성폭력 예방 및 교육안내 자료, 홍보를 위한 전단지 또는 포스터를 제작비 3,000,000원 예산추가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마) 이슬람 및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교회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한 이슬람 대책 영상 제작비 및 회의비 7,000,000원 , 단군상문제대책사업 예산 5,000,000원은 허락하고 USB제작비는 불허하다.

바) 행정·재무처

① 세목 및 산출기초 전용 요구 허락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2/4)	전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사유
(지출부) 정보· 미디어	전산유지 보수비	67,840,000	23,001,519	0	67,840,000	* 서버구입 1,000만원 예산 중 300만원 세목전용 (같은 항,목에서 전용) 1. 서구구입비 1,000만원 전용금액 : 300만원 감소 예산액 : 700만원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입 300만원(신규) 전용금액 : 300만원 증가 예산액 : 300만원
합계		67,840,000	23,001,519	0	67,840,000	

사) 총회임원수련회가 제출한 해외 수련회 예산을 국내 수련회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 청원 건은 105회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할 경우 추후에 전용하기로 하고 보류하다.

재정정책연구위원회

가. 제1차 재정정책연구위원회(2020. 11. 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제105회기 재정정책연구위원회 조직을 확인하다.

2) 제105회기 사업 계획안을 검토하다.

가)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 연구

나) 목회자생활비 및 퇴직금제도 연구

다) 기부금 활성화 연구 등 총회 및 노회, 교회의 장기적인 재정정책 연구

3) 제105회기 현의 안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다.

4) 제103회기 이후의 계속 연구 안건을 확인하고, 자료 보완 및 연구 검토하여 12월 10일 재정정책협의회시까지 발표하기로 하다.

가) 상회비 감소에 따른 대책 안

나) 총회헌금 의무제 미납노회(3개)에 대한 대책 2개 노회 현황

다) 산하기관 직급, 급여체제 통일안 연구

세정대책위원회

가. 제1차 세정대책위원회(2020. 11. 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제105회기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가) 교회 세정상담 업무의 경우 매뉴얼을 기본으로 총회 홈페이지의 세무 상담 코너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제105회기 교회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교육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가) 교회직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신고 교육

① 수도권지역 : 2021. 1. 28(목) 오후 2시 / 백주년기념관 / 강사 김진호장로

② 수도권 외 지역 : 2021. 2. 2(화) 오후 2시 / 대전신학대학교 / 강사 김진호장로

나) 종교인소득세 등 세무신고 교육

2021. 4. 29(목) 오후 2시 / 백주년기념관 / 강사 김진호 장로 / 강의 영상 촬영 후 배포

다) 9월 말에 교회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재정교육을 하기로 하다. (일시는 추후 논의)

3) 목회자 퇴직소득세 산정에 대한 대정부 대책 건은 12월 9일 재정정책협의회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다.

4) 2021년 반기신청서 제출 안내는 빠른 시일에 각 노회로 공문발송하기로 하다.

5) 재정부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에 따른 총회재무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다.

예산결산위원회

가.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2020. 11. 4.,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결의사항 : 1) 제105회기 예산결산위원회 조직을 확인하다.

2) 제105회기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제106회기 예산안 편성

나) 기타 예산안 편성 관련 연구(회계연도 변경건 등)

다) 제106회기 총회 각 부·위원회 결산안 승인

3) 제105회기 예결산위원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다.

가) 제1차 회의 : 2020. 11. 4 : 조직 및 사업계획안 논의

나) 제2차 회의 : 2021. 7월경 - 제106회 예산지침서 작성

다) 제3차 회의 : 2021. 8월경 - 제106회 총회 예산안 편성

라) 재정부 정책협의회 : 2020년 12월 10일(목) 장소: 미정

마) 재정부 정책세미나 : 2021년 5월 말 경

4) 제105회기부터 통합예산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 방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형욱 장로, 이광홍장로, 이훈범장로, 재무회계국장 이식영장로 포함 4명을 연구위원으로 선정하여 연구 안을 정책협의회시 의논하기로 하다.

가) 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나) 직급별 호봉제한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팀장제로 직급이 변경 될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다)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① 대상 : 일반직원 중 20년 이상 재직하고 만 55세 이상자, 정년퇴직이 7년 이상 남아 있는 직원

② 순직자 추가 조항 신설 필요

라) 직급 변경에 따른 직책(직무)호봉표

① 직급 변동 내용

현 재		변경 후	
직급	수당지급액	직원구분	수당지급액
실장	월 20만원	1. 팀장 2. 직원	
실장대우·과장	월 15만원		
과장대우·대리	월 10만원		
직원(교통수당)	월 5만원		

② 직급변동에 따른 호봉표 조정안

- 직급과 별도로 호봉유지 방안 급(1급-6급), 현호봉 : 총무급 30호봉/ 실장, 과장 , 대리 35호봉/ 직원 30호봉

- 연봉으로 전환 하는 방안 - 매년 연봉계약

5) 제105회기부터 시행되는 재무관련 규정안을 검토하고 수정내용은 보완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가) 개정된 보수규정

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② 직급별 호봉 제한형 운영규정

③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I. 국내선교부

1.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1년 3월 15일까지)

가. 제105회 총회 주제사업

- 1) 한국교회 코로나19 회복을 기원하는 2020 총회 대각성기도회 : 2020. 11. 12(목) 11:00, 도림교회

부제 : “Refresh Wave,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교회의 회복, 영성의 회복

내용 : 가) 예배(설교 : 신정호 목사, 총회장)

나) 총회 주제 및 정책설명

- (1)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최인기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명예교수)
- (2)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 사업설명(김의식 목사,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장)
- (3) 간담회 :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 수렴
- (4) 총회장 담화문 발표

다)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 사업설명을 위한 권역별 모임

- 2) 2021 신년특별기도회 : 2020.12~2021 연중 실시

초청대상교회 : 1,096개

노회참여 : 65개 노회

총회상임 부위원회 참여 : 43개 위원회, 531명 위원 중 218명 참여

나. 전체사업

- 1) 제105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정책협의회 : 2020. 12. 3(목)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회복”

내용 : 가) 개회예배(설교 : 임현희 목사, 총회국내선교부장)

나) 위드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목회적 제언(고형진 목사, 강남동산교회)

다) 한국교회 현황분석 및 신학적 제언(최상도 교수, 호남신학대학교)

라) 제105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사업계획 및 노회와의 협력과제

(문장옥 목사, 총회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

다. 전도 분과

- 1) 제105-1차 전도연구위원회 : 2020. 10. 30(금) 10:3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설문조사를 위해 각 노회와 여러 위원회들과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라. 개척선교 분과

- 1) 제24기 총회 교회개척훈련(온라인) : 2020. 10. 21(수) 10:00-27(화)

내용 : 총회사이버교육원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활용해 동영상 강의로 훈련 진행함.

- 2) 제24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지역별컨설팅 : 2020. 11. 17(화)-26(목)

- 3) 제24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수료 : 2020. 12. 2(수) /수료 : 41개 노회 114가정

- 4) 제105-1차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 : 2021. 1. 26(화)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가) 교회개척훈련생 연령을 만60세로 제한해 달라는 건은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기로 하다.

- 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회개혁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모금하기로 하다.

마. 청소년선교 분과

- 1) 학원선교주일 (2020. 11. 1 주일) : 총회장 목회서신 및 예배자료 배포
- 2) 제105-1차 청소년학원선교정책연구위원회 : 2020. 10. 29(목) 14: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가) 대표성 있는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다.
나) 청소년 선교에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연구위원을 추가하기로 하다.

바. 직장, 병원의료선교 분과

- 1) 직장선교연구소 세미나 : 2021. 1. 5(화) 15:00,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교회교육 (이효재 목사, 맑은물가온교회)
- 2) 제105회기 직장선교후원회 총회 : 2021. 3. 4(목)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가) 오창우 목사(서울서노회, 한남제일교회)를 회장으로, 수석 부회장에 손유탕 목사(서울노회, 남대문교회), 상임 부회장에 정해우 목사(평북노회, 신양교회)로 선출하다.
나) 직장선교후원회 산하 직장선교연구소장으로 한국일 목사를 선임하다.
- 3) 제105-1차 병원선교연구위원회 : 2021. 2. 23(화) 14:00,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코로나 19 등의 재난 상황 속에서 병원선교 방향성 및 병원 내 사역자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사. 목회개발 분과

- 1) 제105-1차 예배학교연구위원회 : 2021. 1. 19(화) 15:00,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온라인 예배 및 공교회로서의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비대면시대의 온라인 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각 연구위원들이 논제를 정리 후 제105-2차 연구위원회서 논의하기로 하다.
- 2) 제105-2차 예배학교 연구위원회 : 2021. 2. 25(목) 15:00,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비대면 시대의 예배신학과 성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다.
- 3) 제105-1차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 : 2020. 12. 18(금)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별 소주제 및 분과별 연구과제를 분담하다.
- 4) 제105-2차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 : 2021. 1. 15(금)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예배분과는 공유예배당 제도를, 전도분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도에 미친 영향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전도의 방향을, 선교적교회분과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목사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다.
- 5) 제105-3차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 : 2021. 2. 26(금) 10:3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각 분과별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다.

아. 상담 및 영성분과

- 1) 제105회기 총회상담학교 목회상담세미나 : 2020. 11. 17(화) 13: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제 : 코로나 시대 불안, 우울과 목회 상담
내용 : 가) 코로나시대 불안과 우울에 대한 심리의학적 이해(이윤주 박사,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나) 코로나시대 불안과 우울에 대한 목회상담과 목회 돌봄의 방향(김정선 교수, 실천신학대학교)
다) 코로나블루시대의 상담목회와 마음건강(김대동 박사, 분당구미교회)
- 2) 제105회기 총회 상담학교 세미나 : 2021. 3. 2(화) 13:00, 광야의 영성(유튜브 실시간 방송)
주제 : 코로나시대 가족갈등 해법을 위한 대화법
내용 : 가) 뉴노멀시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자녀 Feel 通 노하우(이상익 교수)
나) 대화하는 부부 : 정서중심적 이론으로(조인호 교수)
- 3) 제105-1차 총회기도학교 교무위원회 : 2020. 11. 20(금) 15: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자 영성훈련을 금회기 중 실시하기로 하다.

2.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1년 3월 16일 - 6월 30일)

가. 전도 분과

- 1) 총회전도학교 전도동력세미나 : 2021. 5. 10(월)-12(수), 미정

나. 개척선교 분과

- 1) 제25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
수도권, 중부권 : 2021. 3. 16(화) 13:3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믿음실
서부권, 동부권 : 2021. 3. 18(목) 13:3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믿음실
- 2) 제25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온라인 강의 : 2021. 3. 22(월)-28(일)
- 3) 제25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컨설팅 : 2021. 4. 13(화)-22(목)
※ 수도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컨설팅 진행
- 4) 제25기 총회 교회개척훈련 전체탐방 및 수료식 : 2021. 4. 29(목) 13:30, 천안주복교회
- 5) 제105-2차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 : 2021. 3. 30(화)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6) 개척교회 아이디어 공모전(가제) : 2021. 5~6월 중

다. 직장 및 병원의료선교 분과

- 1) 제105회기 병원의료선교워크숍 및 원목협의회 총회 : 2021. 6월 예정

라. 목회개발분과

- 1) 제105-3차 예배학교연구위원회 : 2021. 3. 26(금) 10: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2) 제105-1차 성폭력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21. 4. 2(금) 11:00,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회의실
- 3) 여교역자사역연구위원회 : 2021 4. 5(월) 14:00,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회의실
- 4) 포스트코로나시대의목회전략연구위원회 예배분과 간담회 : 2021. 4. 9(금) 10: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5) 포스트코로나시대의목회전략연구위원회 공청회
가) 선교적교회분과 : 2021. 5. 11(화) 10:3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나) 예배분과 : 2021. 5. 14(금) 14: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마. 상담 및 영성분과

- 1) 총회상담학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업무 협약식 : 2021. 4. 23(금)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II. 군경교정선교부

1.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1년 3월 15일까지)

가. 전체사업

- 1) 제105회기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정책협의회 : 2021. 2. 18(목) 13: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제 : “코로나시대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과 특수선교현장의 선교적 접근”
내용 : 가) 개회예배(설교 : 권위영 목사, 총회 군경교정선교부장)
나) 포스트코로나19 한국교회의 갈 방향(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교)
다) 코로나시대 이후 교정선교 전문사역에 대하여(변상해 목사, 서울벤처대 부총장)
라) 코로나시대 이후 군선교현장의 변화와 선교적 방향(유경수 목사, 교육사령부 군종실 소령)
마) 제105회기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사업계획 및 노회와의 협력과제
(문장옥 목사,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바) 종합토론(사회 : 이형준 목사,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서기)

나. 군선교

- 1) 2020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9. 23(수), 합격자 : 6명
- 장신대(5명) : 문진민, 양하람, 우승민, 유준현, 이민석 -연세대(1명) : 서형주
2) 총회 군선교후원회 제26차 실행위원회 : 2020. 9. 15(화) 11:00, 육군회관 연제근홀(5층)
내용 : 제104회기 사업/결산 보고 및 제105회기 후원회 사업 계획 논의 등
후원 : 영락교회
3) 총회 군선교후원회 조찬기도회

회차	일자	후원	장소
187	2020. 10. 23(금) 07시	동신교회(총회장/신정호목사) 〈16주년 창립 감사예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188	2020. 11. 2(월) 07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189	2021. 1. 22(금) 07시	영락교회(김운성목사)	
190	2021. 2. 18(목) 07시	소망교회(김경진목사)	
191	2021. 3. 8(월) 07시	서울숲교회(권위영목사)	

- 4) 총회 군선교사회 임원 및 군선교후원회 회의 : 2020. 10. 23(금) 10:30, 길동무 회의실
내용 : ‘군선교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 및 ‘군선교사회 송년회’계획 및 논의
5) 2021년도 임관예정 군종사관후보생 예비소집 및 신체검사 : 2021. 1. 13(수), 국군수도병원
임관예정자 : 박승지 목사(평남노회), 이재건 목사(부천노회), 진주찬 목사(영등포노회)
6) ‘2021 총회 사랑의 온차’전달식 : 2021. 2. 1(월) 14:30
장소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교회(군종 소령 성기우 목사)
참석 : 총회장, 총회임원,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임원, 영락교회 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장, 군선교후원회 등 25명

후원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영락교회 각 500만원

7) 2021년도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준비회의

주관 : 서울강남(동부)권 5개노회(서울남·서울관악·서울동남·서울강동·서울강남)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1차	2021.2.2(화)10시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회의실	5개 노회 노회장	설명회 및 예산논의
2차	2021.3.9(화)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 관 2층 회의실	5개 노회 노회장 및 군경교정선교부장	준비위원회 조직구성 및 예산논의

8) 군선교현장방문(군선교사)

성명	부대 / 교회	방문일
김요한 목사	1포병여단 / 햇불교회	2. 10(수)
이수미 목사	5포병여단 / 시온교회, 환희교회	3. 10(수)

9) 2021년도 총회 군종목사 수련회 1차 준비회의 : 2021. 2. 16(화)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대전·충청·강원지역 9개 노회 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및 예산논의

10) 2020년도 초임군종목사(78기) 부대방문

성명	부대 / 교회 / 지역	소속노회	방문일
육) 주찬양 목사	8사단1여단 / 번개교회 / 포천	서울동남	3. 8(월)

11) 2021년도 임관예정자 소집교육 : 2021. 3. 11(목)~12(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관

주최/주관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임관예정자 : 박승지목사(평남노회), 이재건목사(부천노회), 진주찬목사(영등포노회)

*입영 : 2021. 3. 31(수) / 임관식 : 2021. 6.25(금)

다. 경찰·교정·소방선교

1) 총회 교정선교협의회 임원회 : 2020. 10. 29(목) 12:00, 충남 홍성 홍주교회

내용 : 제105회기 사업 및 교정선교아카데미 논의

2) 총회 경찰교정선교주일 : 2020. 11. 8(주일)

내용 :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

*총회 부서 홈페이지, 기독교보 기사(홍보)

3)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워크숍 및 임원 위촉식 : 2020. 11. 12(목) 17:00-13(금),

대전 세계로교회 및 대전 계룡스파텔

내용 :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교정선교 정책 및 임원 위촉식

4) 총회 경목협의회 워크숍 및 수련회 : 2020. 11. 16(월) 11:30-17(화), 여수영락교회 및 HS관광호텔

내용 : 경찰선교 활성화 방향 모색

5) 교정시설 성탄절 성경전달식 : 2020. 12. 15(화) 16: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청주여자교도소외 4개 교정시설 성경전달

6) 총회 교정선교협의회 화상회의 : 2021. 1. 12(화) 17:00,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교정선교협의회 교정선교아카데미 커리큘럼회의

- 7)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및 총회 교정선교협의회 하례회 및 회의 : 2021. 1. 22(금) 14:00,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 교수회의실
내용 : 교정선교후원회 및 교정선교협의회 하례회 및 사업 논의
- 8) 총회 소방선교후원회 & 소방선교협의회 연석회의 : 2021. 2. 22(월)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총회 소방선교후원회, 소방선교협의회 사업진행 협력방안 모색
- 9) 총회 경목협의회 전체회의 : 2021. 3. 9(화) 11:00, 음성장로교회
내용 : 정기총회 준비 연석회의

2.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1년 3월 16일 - 6월 30일)

가. 군선교분과

- 1) 2021년도 임관예정자 격려행사 및 교단 소집교육

내용	일시	장소
격려행사	2021. 3. 16(화) 오전11시	영락교회
소집교육	2021. 3. 16(화) 오후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임관예정자 : 박승지목사(평남노회), 이재건목사(부천노회), 진주찬목사(영등포노회)

- 2) 2020년도 초임군종목사(78기) 부대방문

성명	부대 / 교회 / 지역	소속노회	방문일
육) 윤태훈 목사	12사단17연대 / 쌍호교회 / 인제	서울	3.29(월)
육) 윤하진 목사	27사단79연대 / 열린문교회 / 화천	서울강북	
해) 민재원 목사	제주해병9여단 / 해병대제주교회 / 제주	평남	4~5월중
공) 나현빈 목사	공군8355부대 / 울릉기독교교회 / 울릉	서울서북	

- 3) 제237차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자 연합조찬예배 : 2021. 4. 14(수) 07시,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
주최 / 주관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 예정(통합)총회
- 4) 2021년도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 2021. 5. 1(토) 14:00, 연무대교회
주관 : 서울강남(동부)권 5개 노회(서울남·서울관악·서울동남·서울강동·서울강남)
- 5) 제105회기 총회군종목사 수련회 : 2021. 5~6월중
주관 : 대전·충청·강원지역 9개 노회
- 6) 제105회기 총회군선교사 수련회 : 2021. 6월중, 강원도

나. 경찰·교정·소방선교분과

- 1) 제105회기 교정선교협의회 워크숍 및 총회 : 2021. 5. 31.(월)~6. 2.(수)
- 2) 총회 경목협의회 경목대회 및 정기총회 : 2021. 6월 중
- 3) 소방선교협의회 및 소방선교후원회 워크숍 및 총회 : 2021. 6. 28.(월)~29.(화)
- 4) 교정선교 온라인 워크숍 : 2021. 6월 중

Ⅲ. 교회동반성장위원회

1.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1년 3월 15일까지)

가. 제105-1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2020. 12. 17(목)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1) 2020년 특별지원 특별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 1년간 특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결의하여 해당 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지원하는 교회, 노회	지원받는 노회	2020년 지원금(연)
명성교회	진주노회	24,000,000
	충북노회	74,400,000
안산제일교회	목포노회	12,000,000
합 계		110,400,000

- 2) 군산노회에서 지역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특별지원이 연결된 영락교회 600만원 지원금은 군산노회 동반성장위원회로 전달하기로 하다.
- 3) 교회동반성장정책과 3차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임원회와 실무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나. 제105-1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회 : 2021. 1. 26(화) 14:00, 총회장실

내용 : 1) 교회동반성장지침 2차 3개년(2019-2021)에 대한 평가와 3차 3개년 지침 구성을 위한 교회 동반성장정책연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 2) 2021년 교회동반성장사업 9-라항 ‘지원받는 노회 중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80%이상인 노회는 2차 3개년 기간 중에 자립노회로 전환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해당하는 노회 3곳(전북노회, 순천남노회, 여수노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다. 제105-2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2021. 2. 25(목) 10:30,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제105회기 지역별 세미나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임원회와 실무자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라. 제105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 : 2021. 2. 25(목)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1) 개회예배(설교: 신정호 목사, 총회장)

- 2) 주제강의 :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조주희 목사, 제105회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 3) 정책설명 : 2020년 교회동반성장사업 보고 및 2021년 교회동반성장지침 설명
(문장옥 목사, 총회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

- 4) 종합토론(김상중 목사, 제105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서기)

마. 제105-1차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위원회 : 2021. 3. 2(화) 11: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1) 총회 특별위원회로서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를 인지하며,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자립대상교회의 목회현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다.

- 2) 교회동반성장지침 3차 3개년(2022-2024) 지침 구성을 위한 연구를 위해 노회의 의견을 청

취하기로 하다.

2.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1년 3월 16일 - 6월 30일)

가. 제105회기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선교대회 및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

구분	수도권	중부(충북, 충남), 강원	서부(전남, 전북)	동부(경남, 경북)
일시	2021.5.18(화)	2021.5.20(목)	2021.5.25(화)	2021.5.27(목)
장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IV.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1. 국내선교부

가. 노회 내 신설교회 개척 목회자에 대하여

- 1) 총회 교회개척훈련을 반드시 수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총회 교회개척훈련을 받는 목회자에 대한 등록비와 교회탐방, 수료식 등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과정, 2과정, 3과정, 수료식)
- 3)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개척을 준비할 때에 무임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개척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91회 총회 결의 : “지교회 설립(가입) 허락 시 설립되는 지교회의 담임교역자는 반드시 총회교회개척훈련 과정을 이수한 분으로 한다.)

나.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회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노회원들(목사, 장로)에게 격년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104회기 총회(2019.9.23.)에서 채택된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안”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노회 시 교회 성폭력 예방 홍보 포스터와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집이 전국교회용으로 발송되오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 노회와 총회의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노회 국내선교부 총무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경교정선교부

가. 2021년도 임관예정자(4명 - 영등포, 서울동남, 부천, 평남노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2021.2.4. ‘국내외군특수선교처-179 2021년도 임관예정 군종목사 명단 알림 및 지원 요청’ 참조)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관식 : 2021.6.25.(금) / 육군종합행정학교(충북 영동)

나. 군종사관후보생 신대원 재학생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하여 가을노회 시에 목사안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105회기 총회군선교주일(2020.4.25.)에 노회소속 군선교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를 초청하여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서 설교 및 군선교 보고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21년도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5월 1일(토)에 연무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주관 노회(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에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105회기 총회군종목사 수련회를 위해 해당 주관 노회(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강원동)에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총회경목협의회 경목대회 및 정기총회(2021년 6월 예정)가 있습니다. 노회 경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총회교정선교협의회 온라인 워크숍이 6월 중 있습니다. 노회 교정교역자들이 온라인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총회소방선교협의회와 소방선교후원회 워크숍이(2021. 6. 28)있습니다. 노회 소방위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지역노회 산하 경찰서, 교정시설, 소방서에 경목, 교정교역자, 소방목사등 전문 교역자를 파송해주시길 바랍니다.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 가. 2021년 노회 교회동반성장사업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총회교회동반성장사업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추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나. 제105회 총회에서 결의된 2021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교회동반성장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 실시사업 보고(2020. 9. 24 ~ 2021. 3. 15)

1. 전체회의

가. 총회 세계선교부 회의: 2020. 9. 24.(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나. 실행위원회

- 1) 1차: 2020. 9. 24.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2) 2차: 2020. 10. 19. (월)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 3) 3차: 2020. 12. 8. (화) / 대전노회 회의실
- 4) 4차: 2019. 2. 20.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다. 임원회

- 1) 1차: 2020. 10. 7. (수)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온카페 회의실
- 2) 2차: 2020. 10. 28. (수) / 국수교회 1층 회의실
- 3) 3차: 2020. 11. 11. (수)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 4) 4차: 2020. 12. 28. (월) /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701호
- 5) 5차: 2021. 1. 18. (월)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 6) 6차: 2021. 2. 3. (수) /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701호
- 7) 7차: 2021. 3. 9. (화) / 화상회의

라. 분과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 1) 인사분과위원회(1차): 2020. 11. 20. (금) /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관 1층
- 2) 인사분과위원회(2차): 2021. 2. 17. (수) / 화상회의
- 3) 타문화분과위원회(1차): 2020. 12. 14. (월) / 화상회의
- 4) 타문화분과위원회(2차): 2020. 12. 21. (월) / 화상회의
- 5) 복지분과위원회(1차): 2021. 1. 21.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사랑홀
- 6) 에큐메니칼선교분과위원회(1차): 2020. 11. 26.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7) MK사역위원회(1차): 2021. 1. 27. (수) / 화상회의
- 8) 멤버케어사역위원회(1차): 2020. 11. 19. (목) /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8층
- 9) 멤버케어사역위원회(2차): 2021. 1. 21.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1. 전체사업

가.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선교사 관리사업

- 1) 故 정명화 선교사 장례예배

일 시: 2020.10.28.(수)

장 소: 국수교회

- 2) 세계선교부 산하 멤버케어사역위원회 창립예배 및 총회

일 시: 11.19.(목)

장 소: 평남노회 사무실

- 3) 장신대 선교관 1층 온하우스 공사

2020.11.1(주일)	조재호,최은진	동북아	안동(경안)
2020.11.1(주일)	유한진,조경숙	태국	금산제일(대전)
2020.11.26.(목)	황규영,박현숙	동북아	본부(평양)
2020.12.2.(수)	최석봉,장애경	캄보디아	본부,평촌(안양)
2020.12.6(주일)	김대환,한주희	베트남	주님의(평남)
2020.12.13(주일)	김청곤,김현미	일본	가나안(서울강동)
2020.12.27(주일)	이용환,윤초롱	파라과이	중부명성(충북)
2020.12.27(주일)	최현	탄자니아	동문(서울강동)
2020.12.30(수)	조순자	니카라과	소정(부산)
2021.2.21(주일)	차홍주, 정연정	칠레	한남제일(서울서)

II.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계획(2021. 3. ~ 2021. 8.)

일 정	내 용
3월	제105-2차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 접수
4월	제105-2차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
	예장유립선교대회 (화상회의)
	제105-5차 실행위원회의
	제105-3차 타문화분과위원회의
5월	제105-2차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 수료식
	제105-3차 선교사인사분과위원회의
	제105-3차 멤버케어사역위원회의
	제105-2차 선교연구위원회의
6월	제105-6차 실행위원회의
	제105-1차 한인목회선교분과위원회의
	제105-4차 타문화분과위원회의
7월	제105-2차 에큐메니칼선교분과위원회의
	제105-2차 선교사복지분과위원회의
8월	제105-7차 실행위원회의
	제105-5차 타문화선교분과위원회의
	제105-4차 선교사인사분과위원회의

III. 총회 파송선교사 현황보고

총회선교사 파송현황(2021년 3월 15일 현재)				
	구분	파송국가	가정	인원(명)
1	장기	84	634	1,214
2	수습	50	119	232
3	장기전문인	21	36	60
4	단기전문인	2	2	6
5	자원,견습	0	0	0
6	고문(명예)	1	3	3
7	현지	3	4	7
8	위탁	1	1	2
9	에큐	4	6	7
합계		87	805	1,531

IV.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1. 선교사의 파송은 반드시 지역교회나 노회가 아닌 총회를 통해 파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하반기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 일정이 총회세계선교부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교공보를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각 노회 및 교회에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선교현장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파송된 1,528명의 본 교단 총회파송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19:19)”는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있기도 하며, 원인 불명의 병으로 갑작스럽게 순직을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회 및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후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해외 선교사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회 및 교회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행1:8)”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인 : 총무 김명옥 목사

1. 교육자원부(주제 :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스10:1,12/행3:19~21))

가.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30회)

- 가) 부원회의 1회
- 나) 실행위원회 3회
- 다) 임원회의 3회
- 라) 교육과정및교육연구위원회 1회
- 마) 예식서개정위원회 1회
- 바) 다음세대중장기대책위원회 9회
- 사) 총회 성경표준주석편집위원회 1회
- 아) 총회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 2회
- 자) 총회 세대별위원회 3회
- 차) 총회 기독교학원위원회 2회
- 카) 총회 주제연구위원회 3회
- 타) 총회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 1회

2) 교재 및 자료개발에 관한 회의 (50회)

- 가) 영유아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청년부/장년부/노년부 공과개발 회의
- 나) 구역예배/절기묵상집/기타 자료개발 회의

3) 교육자원부에서 기획 편집하여 출판된 교재 (46종)

- 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G.P.L S :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1학기(24종)
 - (1) 영아부 교사, 어린이(2종)
 - (2) 유아부 교사, 어린이(2종)
 - (3) 유치부 교사, 어린이(2종)
 - (4) 영아부 지도자교재(자료USB포함), 지도자그림자료(2종)
 - 유아유치부 지도자교재(자료USB포함), 지도자그림자료(2종)
 - (5) 저학년 교사, 어린이(2종)
 - (6) 고학년 교사, 어린이(2종)
 - (7) 아동 지도자(자료USB포함)(1종)
 - (8) 중고등부 교사, 학생, 지도자자료(9종)
- 나) 겨울 및 새봄성경학교 교재(1종)
 - (1) 중.고등부(1종)
- 다) 자료 개발(7종)

- (1) 구역예배 인도자, 학습자 구역워크숍 리더용, 멤버용(4종)
- (2) 절기자료 - 대림절 깊은 묵상집(1종)
- (3) 교육주제 42(1종)
- (4) 노년 말씀청춘(1종)

4) 교육자원부에서 편집하여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타 단행본 및 성경공부 교재

가)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 자료

- (1) 성경통신과 초급과정 <믿음의 이야기> (구약, 신약 문제집, 답안지)
- (2) 성경통신과 중급과정 <소망의 이야기> (구약, 신약 문제집, 답안지)
- (3) 성경통신대학(I, II, III, IV, V 권, 문제집, 답안지)

나) <교사를 위한> 자료

- (1) 교사스토리(지도자용, 학습자용)
- (2) 교사영성대학(지도자용, 교사용)
- (3) 교사리더십대학(지도자용, 교사용)

다) <제직을 위한> 제직훈련교재 지도자 및 학습자용(실천편, 이론편)

라) <향존 직분자를 위한> 피택 향존직 훈련교재 지도자 및 학습자용

마) <새신자를 위한> 거듭난 사람들 지도자 및 학습자용

바) 구역장·권찰 교육교재 지도자 및 학습자용(기초편, 고급편)

5) 세미나 외

가) 기독교교육주간 및 2021 교육정책 TIP세미나(1회)

나) 총회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 정책 세미나(4회)

다) 2021 GPL 스페셜 공과 설명회(4회)

라) 105회기 교육자원부 정책협의회(1회)

마) 산하단체(교회학교유치/아동/중고 3개연합회, 교목연합회) 총회

바) 총회 주제연구위원회 총회주제 심포지엄(1회)

나. 하반기 주요 사업

- 1) 정책위원회 -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를 비롯한 교육자원부 특별위원회와 총회 특별위원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별도위원회 포함)
- 2) 교재개발 -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구역공과를 위한 GPL 스페셜 공과 및 계절학교 교재(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를 개발하는 일
- 3) 자료개발 - 주일공과를 제외한 각종 자료개발교재 및 단행본을 개발하는 일
- 4) 세미나 - 여름성경학교 교재 세미나(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다. 노회 건의 및 당부 사항

- 1) 교단 내 모든 교회에서 GPL 스페셜 공과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총회창립100주년기념으로 우리 교단 제4차 교육과정인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딤후6:11, 마5:14 G.P.L,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공과를 6년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였고, 이어서 2019-2020 2년 커리큘럼으로 GPL 플러스 공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2023 3년 커리큘럼으로 GPL 공과를 재구성하여 계시, 말씀, 비전과 변혁을 주제로 한 GPL 스페셜 공과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공과는 GPL 공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교육과정으로 교회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원포인트 교육이 가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지난 제92회 총회, 제94회 총회때에 교단 총회 교육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여 허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단 총회 교육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회 교육자원부가 만들어 내는 교재는 장로교의 전통을 답지한 교재이며 타 교단에서 우리 교재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타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에서는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만들어 내는 교단 교육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노회에서도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훈련원운영위원회

가.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 1) 회의 (11회)
 - (가) 부원회의 1회
 - (나) 임원회의 2회
 - (다) 실행위원회 2회
 - (라) 후원이사회 1회
 - (마) 3개소위원회 1회
 - (바) 커리큘럼위원회 회의 4회
- 2) 정책협의회 (1회)
 - (가) 제105회기 훈련원 정책협의회
- 3) 지역 훈련원 총회
 - (가) 강북지역, 강남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 4) 여교역자온라인계속교육(3회)
- 5) 전도사계속교육(1회)
- 6) 훈련원 자료(증보판 출판 예정)
 - (가) 훈련원 피택자교육용 선택받은이를 위한 네비게이션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 1) 정책위원회 - 훈련원 실행위원회 및 3개 소위원회와 커리큘럼위원회, 훈련원 후원이사회
- 2) 자료개발 - 훈련원 피택자교육용 네비게이션 개정, 목사임직자훈련교재 개발중, 목사계속교육, 장로계속교육 커리큘럼 개발
- 3) 동부지역훈련원 지도자 계속교육 - 3월 19일(금)

3. 신학교육부

가. 제105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 (10회)

- (가) 부원회의 1회
- (나) 임원회의 1회
- (다) 실행위원회 4회
- (라) 총장협의회 1회
- (마) 신학대학교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 1회
- (바) 이사파송규정연구소위원회 1회
- (사) 한일장신대학교조사위원회 1회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 1)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 수련회 예정
 - (가) 일 시 : 6월 21일(월)~23일(수)
 - (나) 참석대상 : 각 신학대학원 신대원 1, 2학년생(약 1300명 예상)

4. 고시위원회

가. 제105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 (5회)

- (가) 임원회의 4회
- (나) 실행위원회 1회
- 2) 2021 목사고시 온라인 접수 마감
2021. 2. 8-2. 15. 1,230명 접수함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 1) 2021년도 목사고시 예정
 - (가) 일 시 : 6월 30일(수)
 - (나)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 (다) 합격자 발표 : 2021년 8월 말

5. 평신도위원회

가. 제105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 (5회)

- (가) 임원회의 2회
- (나) 실행위원회 3회
- 2) 간담회 및 워크숍
 - (가) 전위원장 간담회 1회
 - (나) 워크숍 1회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공청회 예정

(가) 일 시 : 3월 18일(목)

(나)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 사회봉사부 보고

가. 사업보고

1) 사회복지현장활성화

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회자 교육

일시 : 2020.10.15.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4층 소망실

내용 : 주제강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선교의 확장을 중심으로 (강사 : 조용희 목사/기독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참석자 : 30명

나) 사회적경제 2020년 3대종교공동행사 기념식

일시 : 2020.10.22. 오전 11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내용 : ‘코로나19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3대종교지도자 참석

다) 총회시각장애인선교회 총회 및 목회자부부 세미나

일시 : 2020.11.9. 정오 12시 장소 : 대전생명샘교회

내용 : 신임원 선출 및 목회사례 공유

라) 중대기업재해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일시 : 2020.12.15. 장소 : 국회본청 앞

내용 : 중대기업재해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위로 방문

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총회장 성명서 공표(2020.12.29.)

바) 영등포산업선교회 조지송목사2주기 및 선교세미나

일시 : 2021.1.22. 오전10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1층 그레이스홀

내용 : '제1회 지송강좌' 선교세미나-"조지송 목사의 산업선교 중심은 '노동자'였다"로 산업선교의 역사 및 특징 설명, 21세기 산업선교의 과제 제시.

2) 재해구호

가) 함해노회, 부산동노회 태풍 재해피해현장 실사

일시 : 2020. 10. 12.~13. 장소 : 부산

내용 : 부산동노회 피해교회 현장실사 및 부산지역에 있는 함해노회 피해교회 실사

나) 속초농아인교회 입당감사예배

일시 : 2020.11.5. 오전11시 장소 : 속초농아인교회

내용 : 총회임원회, 강원동노회 임원, 강원도산불구호 및 속초농아인교회 관계자들이 모여 속초농아인교회 입당예배를 드리며 강원도 산불구호 중장기 구호사업을 마무리 함(설교 신정호 총회장, 감사 패 공로패 증정 등).

다) 국내재해구호지원

(1) 수해(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위로회-아산지역(2020.8.12. ₩12,000,000)

(2) 수해(집중호우) 피해 지원(진주노회,충주노회)-영락교회 지정기탁(2020.9.4. ₩20,000,000)

(3) 수해(집중호우)피해 지원-남원노회 금남교회(2020.9.4. ₩10,000,000)

(4) 수해(집중호우) 피해 1차 지원-30개노회 118개교회(2020.9.24. ₩348,000,000)

(5) 수해(집중호우) 피해 2차 지원-4개노회 18개교회 (2020.10.23. ₩59,800,000)

(6) 수해(집중호우) 피해 3차 지원-3개노회 6개교회(2020.11.12. ₩16,000,000)

라) 강원지역산불피해구호

- (1) 강원지역산불피해구호 현금명단 광고료 및 백서발간비(2020.11.7. ₩5,605,000)
- (2) 강원지역산불피해 임시주택이주민 난방비(1가구당 20만원씩) 총49가구 지원(2020.12.3. ₩9,800,000)

마) 코로나19 재해구호

- (1) 자가격리 선교사 5차 지원(2020.7.24. ₩7,614,600)
- (2) 자가격리선교사 지원사업-관리비(2020.9.29. ₩194,220)
- (3)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코로나19 방역비 지원(2020.8.4. ₩5,000,000)
- (4) 자가격리 선교사 6차 지원(2020.8.18. ₩3,900,000)
- (5) 자가격리 선교사 지원사업 월세 및 공과금(2020.8.28. ₩1,511,590)
- (6) '재난시대를 극복하는 한국교회' 제작 및 원고료(2020.9.10. ₩13,405,600)
- (7) 자가격리 선교사 지원사업 월세 및 관리비(2020.9.29. ₩2,194,610)
- (8) 자가격리 선교사 지원사업 월세 (2020.11.4. ₩1,740,000)

바) 해외재해구호지원

- (1) 개척자들 로힝야족 RTS학교 지원(2020.8.5. ₩5,000,000)
- (2) 베이루트 폭발사고 구호-NCCK(2020.10.6. ₩3,490,200)
- (3) 필리핀교회협의회 프로그램국장 긴급심장 수술비 지원(2020.12.3. ₩5,652,650)

사)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긴급구호

- (1) 천안아산/주님의몸뚱이/유정호목사 사모(심진희)급성백혈병 치료비지원(2020.8.5.₩1,000,000)
- (2) 서울서남/서광/유성수목사 대장암 치료비 지원(2020.8.5. ₩1,000,000)
- (3) 충청/학천/장병수목사 심장투석치료비 지원(2020.8.5. ₩1,000,000)
- (4) 경서/구미평안/김동국목사 협심증 치료비 지원(2020.9.29. ₩1,000,000)
- (5) 포항/푸른조창/김치학목사 치료비 지원(2020.9.29. ₩1,000,000)
- (6) 포항/하늘빛/한안섭목사 사모(정재옥) 치료비 지원(2020.9.29. ₩1,000,000)
- (7) 포항남/주영광/이순신목사 치료비 지원(2020.10.6. ₩1,000,000)
- (8) 충청/한마음/김종민목사 아들(김주형) 뇌종양 치료비 지원(2020.11.18. ₩1,000,000)
- (9) 영주/갈산/안순옥목사 뇌경색 치료비 지원(2020.12.2. ₩500,000)
- (10) 경북/철마/김명진목사 자전거사고 치료비 지원(2020.12.2. ₩1,000,000)

아) 특별구호

- (1) 대전서/예안교회(김준기목사 시무) 화재구호 지원(2020.10.6. ₩3,000,000)
- (2) 연말사랑나눔 지원-지원받는 노회 14노회, 자립노회 16노회(2020.12.4. ₩50,500,000)
- (3) 연말사랑나눔 '사랑으로 겨울나기'
 - ① 서울동노회 연말사랑나눔
일시 : 2020년 12월 21일 오전11시 장소 : 서울동노회
내용 : 사랑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쌀 등 생필품 전달식에 부장 참석하여 축하
 - ② 순천남노회 사랑으로 겨울나기(사랑의 쌀나누기)
일시 : 2021.1.25. 장소 : 순천다정교회
내용 : 노회장, 총회사회봉사부장,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이 참석한 예배 및 분배 행사
 - ③ 익산노회 사랑으로 겨울나기
일시 : 2021.2.5. 오전10시30분 장소 : 이리북문교회
내용 : 연말사랑나눔 '사랑으로 겨울나기' 생필품 나누기 행사
- (4) 제105회기 예정 노숙인 복지회와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지원(2020.12.4. ₩30,000,000)

- (5) 제105회기 예정 노숙인 복지회와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일시 : 2020년 12월 21일 오전11시 장소 :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내용 : 총회임원회가 방문하여 격려 및 기도, 선물 증정 순으로 행사를 진행.
- (6) 화재피해교회(용천노회 전곡중앙교회) 위로 방문 및 지원금 전달식
 일시 : 2021.2.1. 오후4시 30분 장소 : 경기 연천 전곡중앙교회
 내용 : 사회 임한섭 사회봉사부장, 위로말씀 및 기도 신정호 총회장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회 임원회, 여전도회 임원회, 용천노회 임원회 등이 참여함.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1년 3월-6월)

- 1)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사업
 - 가) 제106회 총회시 총회사회봉사상 선정 및 표창
 - 나) 노회사회봉사부 총무단 간담회
 - 다) 사회봉사주일(3월 첫째 주/ 총회홈페이지 참고)
 - 라) 총회장애인주일(4월 셋째 주/ 총회홈페이지 참고)
- 2) 인권창조사회문제 정책개발
 - 가) 생태정의포럼 진행
 - 나) 교회환경지도사 교육과정(기초·심화과정)-총회사회봉사부와 부산장신대평생교육원 협력사업
 - 다) 총회경건절제및환경주일(6월 첫째 주 / 총회 홈페이지 참고)
- 3) 인권창조보전사회문제현장개발/활성화
 - 가) 사회선교지도자 양성사업-대상 노회사회봉사부 임원
 - 나) 평화지도자양성과정
 - 다) 인권 및 사회문제 포럼(4월 20일)
- 4) 총회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 가) 총회 인권위원회 사업
 - (1) 제41주기5.18 광주민주화운동및(故)문용동전도사 순직기념예배(5.25./호남신학대학교 대강당)
 - 나) 총회 역사위원회 사업
 - (1) 기독교사적지 관리 및 교회사 우수논문 공모
- 5)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2차 전국모금 및 구호사업

일시	제안내용
2021.3.10.	전국노회 코로나19 2차 피해구호를 위한 교회동반성장사업 현황 보고 요청 공문 발송 붙임자료> 전국노회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추가보고
2021.3.19.	교회동반성장사업 현황 보고 취합
2021.3.25	노회장 간담회 및 기도회
	1) 전국노회 코로나19 피해구호사업 지원내역 공유 2) 총회의 코로나19 피해구호 2차 지원금이 종잣돈(마중물)역할을 하여 노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요청
2021.4.1.	68개 노회 자립대상교회 2차 지원금 노회로 송금
2021.4.1.	노회로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2차 자립대상교회 지원금 송금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발송
2021.4.1.~6.30	노회 2차 자립대상교회 지원사업 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2021.7.1	전국노회 자립대상교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최종 취합

다. 노회 건의 및 당부사항

일시 : 2021.2.19.(금)

장소 : 세종시 세상의빛교회

참석 : 전세광 목사(이사장), 오상열 목사(총무) 외 10인

나. 제105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1년 3월-6월)

1) 제11차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대의원 총회

일시 : 2021. 5.18.(화)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2) 제11차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전국선교대회

일시 : 2021. 7월 중

장소 : 미정

다. 노회 당부 및 건의사항

- 1) 제63회 총회에서 제정한 총회농어촌선교주일(2021년 5월 30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농어촌주일예배(오후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에서 설립한 '세움&나눔' 사업단에서 카페'온' 1호점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개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교회의 생명의 농산물을 도시교회에 공급하는 도농상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노회와 교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3.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사업보고

가. 분단현장 탐방 및 평화통일기도회

1) 일 자: 2020. 11. 5(목)

2) 장 소: 도라전망대(경기 파주)

나. 통일선교대학원 제10기 수료(수료인원 35명)

1) 일 시: 2020. 12. 1(화). 19:00

2) 장 소: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507호

다. 북한선교정책세미나

1)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10:30~14:30

2)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3) 주 제: 남북관계 변화 전망과 북한선교

4) 참가인원: 90명

5) 주요내용

가) 초청강연 : 미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정세 전망 /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나) 발제강의 : 남북관계와 북한선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유영식 교수

북한이탈주민선교/ 총회 새터민종합상담센터 강철민 목사

제105회기 각 노회 상회비 및 부과상회비 납입현황
(2020. 9. 21 ~ 2021. 3. 15. 현재)

(단위 : 원)

NO .	노회명	제105회기 상회비책정액	부과상회비액 (2020.10.14.)	부과상회비 미납액 (제102회기 및제104회기)	책정액 합계	납입액	잔액
1	서 울	222,892,000	7,006,000	0	229,898,000	114,949,000	114,949,000
2	서 울 동	81,904,000	4,566,000	0	86,470,000	0	86,470,000
3	서울동북	60,910,000	6,093,000	0	67,003,000	33,501,500	33,501,500
4	서 울 북	61,842,000	3,664,000	0	65,506,000	32,753,000	32,753,000
5	서울강북	73,460,000	7,418,000	0	80,878,000	40,439,000	40,439,000
6	서 울 서	74,556,000	-	0	74,556,000	35,000,000	39,556,000
7	서울서북	129,966,000	4,933,000	0	134,899,000	68,399,000	66,500,000
8	제 주	47,546,000	810,000	0	48,356,000	0	48,356,000
9	영 등 포	140,308,000	6,793,000	0	147,101,000	40,000,000	107,101,000
10	안 양	78,918,000	4,416,000	0	83,334,000	0	83,334,000
11	경 기	65,671,000	-	0	65,671,000	45,671,000	20,000,000
12	서 울 남	52,258,000	497,000	0	52,755,000	0	52,755,000
13	서울관악	81,474,000	6,954,000	0	88,428,000	0	88,428,000
14	서울동남	124,269,000	18,972,000	0	143,241,000	40,000,000	103,241,000
15	서울강동	144,042,000	13,982,000	0	158,024,000	0	158,024,000
16	서울강남	173,236,000	15,750,000	-	188,986,000	0	188,986,000
17	서울서남	66,878,000	8,935,000	37,781,000	113,594,000	37,781,000	75,813,000
18	서울강서	53,127,000	7,097,000		60,224,000	0	60,224,000
19	부 천	34,631,000	2,514,000	0	37,145,000	20,000,000	17,145,000
20	인 천	119,420,000	965,000	0	120,385,000	60,000,000	60,385,000
21	인 천 동	25,090,000	2,807,000	0	27,897,000	13,948,500	13,948,500
22	충 북	31,829,000	-	0	31,829,000	15,914,500	15,914,500
23	충 청	61,520,000	5,365,000	0	66,885,000	33,442,500	33,442,500
24	충 주	13,114,000	275,000	0	13,389,000	6,694,000	6,695,000
25	대 전	46,355,000	-	0	46,355,000	23,177,500	3,177,500
26	대 전 서	65,513,000	-	0	65,513,000	32,756,500	32,756,500
27	충 남	27,815,000	-	0	27,815,000	27,815,000	0
28	천안아산	39,355,000	-	0	39,355,000	19,677,500	19,677,500
29	전 북	39,894,000	5,069,000	0	44,963,000	22,481,500	22,481,500
30	전 주	39,198,000	5,510,000	0	44,708,000	0	44,708,000
31	군 산	18,029,000	-	0	18,029,000	0	18,029,000
32	익 산	35,307,000	3,318,000	0	38,625,000	20,000,000	18,625,000
33	전 북 동	7,765,000	-	0	7,765,000	7,765,000	0
34	남 원	14,909,000	-	0	14,909,000	14,909,000	0
35	김 제	7,512,000	-	0	7,512,000	0	7,512,000
36	전 서	24,987,000	964,000	0	25,951,000	15,000,000	10,951,000
37	전 남	89,928,000	9,073,000	0	99,001,000	30,000,000	69,001,000
38	광 주	52,341,000	1,189,000	0	53,530,000	25,000,000	28,530,000
39	광 주 동	81,275,000	5,807,000	0	87,082,000	43,540,500	43,541,500
40	순 천	48,103,000	727,000	0	48,830,000	24,415,000	24,415,000
41	순 천 남	44,418,000	-	0	44,418,000	22,000,000	22,418,000
42	순 서	16,681,000	520,000	0	17,201,000	8,600,500	8,600,500

43	여 수	37,696,000	3,147,000	0	40,843,000	20,000,000	20,843,000
44	목 포	14,824,000	-	0	14,824,000	0	14,824,000
45	땅 끝	11,483,000	988,000	0	12,471,000	0	12,471,000
46	진 주	9,203,000	-	0	9,203,000	0	9,203,000
47	진 주 남	9,650,000	-	0	9,650,000	4,825,000	4,825,000
48	경 남	50,276,000	-	0	50,276,000	20,000,000	30,276,000
49	부 산	57,860,000	-	0	57,860,000	28,930,000	28,930,000
50	부 산 동	37,873,000	625,000	0	38,498,000	19,249,000	19,249,000
51	부 산 남	30,798,000	170,000	0	30,968,000	30,968,000	0
52	울 산	52,149,000	2,008,000	0	54,157,000	27,078,500	27,078,500
53	경 북	61,966,000	3,163,000	0	65,129,000	32,564,500	32,564,500
54	대 구 동	49,167,000	-	0	49,167,000	24,583,500	24,583,500
55	대구동남	34,119,000	1,921,000	0	36,040,000	18,020,000	18,020,000
56	대구서남	35,708,000	3,249,000	0	38,957,000	0	38,957,000
57	경 동	34,539,000	-	0	34,539,000	34,539,000	0
58	포 향	56,541,000	513,000	0	57,054,000	28,527,000	28,527,000
59	포 향 남	55,192,000	1,360,000	0	56,552,000	28,276,000	28,276,000
60	경 서	25,477,000	-	0	25,477,000	12,738,500	12,738,500
61	경 안	32,717,000	-	0	32,717,000	16,358,500	16,358,500
62	영 주	31,140,000	-	0	31,140,000	15,570,000	15,570,000
63	강 원	14,985,000	-	0	14,985,000	0	14,985,000
64	강 원 동	18,127,000	-	0	18,127,000	10,000,000	8,127,000
65	평 양	78,326,000	6,694,000	0	85,020,000	20,000,000	65,020,000
66	평 남	225,898,000	17,822,000	39,496,000	283,216,000	39,496,000	243,720,000
67	평 북	132,990,000	3,104,000	0	136,094,000	66,094,000	70,000,000
68	용 천	148,507,000	-	0	148,507,000	48,507,000	100,000,000
69	함 해	88,167,000	8,921,000	0	97,088,000	48,544,000	48,544,000
합 계		4,153,624,000	215,674,000	77,277,000	4,446,575,000	1,570,499,500	2,876,075,500
납입율 :						35.32%	

◎ 제105회기 상회비 납입안내

상반기 : 2020년 11월말

하반기 : 2021년 5월말

제105회기 각 노회 총회헌금 입금현황
(2020. 9. 1 ~ 2020. 3. 15)

(단위 : 원)

NO.	노회명	총회헌금기준액 (세례교인수×1000원)	총회헌금 납입액	총회헌금 기준차액	참여 교회수	교회 총수	참여율(%)
1	서 울	2,324,000	2,715,000	-79,609,000	7	114	6.14%
2	서 울 동	30,251,000	9,350,000	-20,901,000	11	68	16.18%
3	서 울 동 북	22,497,000	2,154,000	-20,343,000	7	142	4.93%
4	서 울 북	22,841,000	3,518,000	-19,323,000	7	97	7.22%
5	서 울 강 북	27,132,000	6,100,000	-21,032,000	18	169	10.65%
6	서 울 서	27,537,000	23,260,000	-4,277,000	38	71	53.52%
7	서 울 서 북	48,002,000	8,500,000	-39,502,000	20	219	9.13%
8	제 주	23,278,000	7,610,100	-15,667,900	19	133	14.29%
9	영 등 포	51,822,000	15,126,000	-36,696,000	16	123	13.01%
10	안 양	29,148,000	9,270,000	-19,878,000	11	88	12.50%
11	경 기	32,152,000	6,853,000	-25,299,000	31	219	14.16%
12	서 울 남	19,301,000	255,000	-19,046,000	2	35	5.71%
13	서 울 관 악	30,092,000	2,889,000	-27,203,000	7	60	11.67%
14	서 울 동 남	45,898,000	100,000	-45,798,000	1	125	0.80%
15	서 울 강 동	53,201,000	1,168,000	-52,033,000	5	174	2.87%
16	서 울 강 남	63,984,000	3,587,000	-60,397,000	4	86	4.65%
17	서 울 서 남	24,701,000	5,850,000	-18,851,000	7	133	5.26%
18	서 울 강 서	19,622,000	185,000	-19,437,000	1	49	2.04%
19	부 천	12,791,000	500,000	-12,291,000	2	114	1.75%
20	인 천	44,107,000	14,617,000	-29,490,000	27	102	26.47%
21	인 천 동	9,604,000	20,000	-9,584,000	1	88	1.14%
22	충 북	19,708,000	-	-19,708,000	-	172	0.00%
23	충 청	30,120,000	12,929,500	-17,190,500	49	120	40.83%
24	충 주	8,120,000	4,485,000	-3,635,000	36	84	42.86%
25	대 전	17,121,000	4,019,000	-13,102,000	13	112	11.61%
26	대 전 서	24,197,000	14,499,000	-9,698,000	37	204	18.14%
27	충 남	13,618,000	473,000	-13,145,000	2	157	1.27%
28	천 안 아 산	15,064,000	350,000	-14,714,000	2	99	2.02%
29	전 북	19,532,000	2,669,000	-16,863,000	16	120	13.33%
30	전 주	19,191,000	8,425,000	-10,766,000	11	135	8.15%
31	군 산	8,827,000	-	-8,827,000	-	65	0.00%
32	익 산	17,286,000	6,425,000	-10,861,000	23	107	21.50%
33	전 북 동	4,808,000	2,796,000	-2,012,000	11	64	17.19%
34	남 원	9,232,000	150,000	-9,082,000	1	96	1.04%
35	김 제	4,651,000	2,252,000	-2,399,000	11	41	26.83%
36	전 서	15,472,000	285,000	-15,187,000	3	98	3.06%
37	전 남	34,422,000	3,697,000	-30,725,000	13	278	4.68%
38	광 주	20,035,000	5,245,000	-14,790,000	8	129	6.20%
39	광 주 동	31,110,000	3,169,000	-27,941,000	9	239	3.77%
40	순 천	23,551,000	6,606,000	-16,945,000	28	199	14.07%
41	순 천 남	21,747,000	15,766,000	-5,981,000	109	162	67.28%
42	순 서	10,329,000	4,316,000	-6,013,000	28	123	22.76%
43	여 수	23,341,000	7,941,000	-15,400,000	27	207	13.04%
44	목 포	9,179,000	1,630,000	-7,549,000	45	138	32.61%
45	땅 끝	7,110,000	2,665,000	-4,445,000	11	113	9.73%
46	진 주	5,698,000	165,000	-5,533,000	2	110	1.82%
47	진 주 남	5,975,000	7,729,000	1,754,000	35	101	34.65%

48	경 남	24,615,000	9,546,000	-15,069,000	20	186	10.75%
49	부 산	21,376,000	8,796,000	-12,580,000	29	140	20.71%
50	부 산 동	13,988,000	4,639,000	-9,349,000	8	87	9.20%
51	부 산 남	11,375,000	5,149,000	-6,226,000	11	65	16.92%
52	울 산	19,261,000	6,166,000	-13,095,000	14	152	9.21%
53	경 북	23,719,000	3,658,000	-20,061,000	13	161	8.07%
54	대 구 동	18,820,000	8,697,000	-10,123,000	19	156	12.18%
55	대 구 동 남	13,060,000	2,700,000	-10,360,000	10	90	11.11%
56	대 구 서 남	13,668,000	720,000	-12,948,000	5	90	5.56%
57	경 동	16,910,000	10,769,000	-6,141,000	38	151	25.17%
58	포 향	20,883,000	12,125,000	-8,758,000	35	152	23.03%
59	포 향 남	20,385,000	5,204,000	-15,181,000	23	99	23.23%
60	경 서	15,775,000	12,760,000	-3,015,000	68	167	40.72%
61	경 안	16,018,000	23,386,000	7,368,000	156	198	78.79%
62	영 주	15,246,000	20,195,300	4,949,300	95	167	56.89%
63	강 원	9,279,000	406,000	-8,873,000	3	97	3.09%
64	강 원 동	11,224,000	3,163,000	-8,061,000	5	101	4.95%
65	평 양	28,929,000	3,196,000	-25,733,000	12	179	6.70%
66	평 남	83,434,000	2,718,000	-80,716,000	27	144	18.75%
67	평 북	49,119,000	10,675,000	-38,444,000	24	270	8.89%
68	용 천	54,866,000	20,696,000	-34,170,000	24	231	10.39%
69	함 해	32,564,000	3,522,000	-29,042,000	10	323	3.10%
70	기 타	-	294,000	294,000	2	-	0.00%
합 계		1,674,243,000	421,493,900	-1,252,749,100	1,423	9,288	15.32%

◎ 제105회기 총회헌금 납입안내

제1차 마감일 : 2021. 6. 30.

제2차 마감일 : 2021. 8. 31.